

세법연구 13-01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2013. 9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전문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12
1. 퇴직연금제도	12
가. 연금제도 체계	12
나. 퇴직연금제도	13
다. 퇴직연금제도 운용 현황	16
2. 퇴직연금 과세제도	18
가. 과세체계	18
나. 연금보험료 납부 단계	19
다. 운용수익 발생 단계	23
라. 퇴직급여 수령 단계	23
3.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및 문제점	34
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과세	34
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38
III. 주요 외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44
1. 일본	44
가. 연금제도 체계	44
나. 퇴직연금제도	46
다. 퇴직연금 과세제도	48
라.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55
2. 미국	60

가. 연금제도 체계	60
나. 퇴직연금제도	62
다. 퇴직연금제도 과세제도	68
라.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84
3. 캐나다	90
가. 연금제도 체계	90
나. 퇴직연금제도	93
다. 퇴직연금제도 과세제도	98
라.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103
IV.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13
1. 국제비교	113
가.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113
나.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119
2. 시사점	127
가. 국제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	127
나. 외국연금소득 과세규정 정비	132
다.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 도입의 필요성	134
라. 조세조약상 연금소득 거주지국 과세원칙 변경	138
참고문헌	140

표 목 차

〈표 II -1〉 퇴직연금제도 운용 현황.....	17
〈표 II -2〉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17
〈표 II -3〉 퇴직연금 과세체계.....	19
〈표 II -4〉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세제.....	22
〈표 II -5〉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	23
〈표 II -6〉 인출형태에 따른 과세 방법.....	24
〈표 II -7〉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비교.....	27
〈표 II -8〉 연금소득공제액.....	28
〈표 II -9〉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0
〈표 II -10〉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	32
〈표 II -11〉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41
〈표 III -1〉 일본의 현행 퇴직연금 유형.....	47
〈표 III -2〉 일본의 퇴직연금 과세체계.....	49
〈표 III -3〉 일본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51
〈표 III -4〉 일본의 퇴직급여 부담금에 대한 과세.....	52
〈표 III -5〉 일본 공적연금 등의 소득 산출 시 적용되는 비율 및 공제액.....	54
〈표 III -6〉 퇴직연금에 대한 일본의 조세조약 개요.....	59
〈표 III -7〉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 · 사용자 손금산입 한도.....	73
〈표 III -8〉 Traditional IRA 연금 부담금의 수정 조정총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74
〈표 III -9〉 예상연금지급 횟수.....	78
〈표 III -10〉 조세조약 연금소득(pension distribution) 원천징국 과세규정.....	87
〈표 III -11〉 조세조약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 부담금 규정.....	89

〈표 III-12〉 사용자 부담금 적립 및 손금산입 한도	100
〈표 III-13〉 연금 부담금 연간 한도(2009~2013)	100
〈표 III-14〉 일시금 원천징수세율(2012)	102
〈표 III-15〉 구간별 연방소득세율	103
〈표 III-16〉 조세조약 연금소득 원천지국 과세규정	107
〈표 III-17〉 조세조약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 부담금 규정	112
〈표 IV-1〉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사용자)	115
〈표 IV-2〉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근로자)	117
〈표 IV-3〉 운용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117
〈표 IV-4〉 수령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119
〈표 IV-5〉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처리	121
〈표 IV-6〉 국제 이동 근로자 연금 소득 과세 규정	123
〈표 IV-7〉 국제 이동 근로자 외국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규정	124
〈표 IV-8〉 국가별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125
〈표 IV-9〉 영구 이주 외국인 증감 추이(OECD 국가, 표준통계)	129
〈표 IV-10〉 해외이주자 증감 추이	130
〈표 IV-11〉 국적별 외국인 체류 증감 추이	134
〈표 IV-12〉 우리나라 조세조약 연금소득 규정 현황(2005년 이후 체결, 개정)	139

그림 목차

[그림 II -1] 한국의 연금체계.....	13
[그림 III -1] 일본의 연금체계	46
[그림 III -2] 미국의 연금체계(2009).....	60
[그림 III -3] 캐나다의 연금체계.....	90
[그림 IV -1] 국제 인구이동 추이(2000~2012).....	128
[그림 IV -2] 사적연금제도를 위한 조세지원.....	131

I. 서론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서 국가 간 인력이동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신규시장 진출에 따라 해외파견 근로자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음
 - OECD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02~2007년 동안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 이상으로 조사되었음¹⁾
 - 근로 제공을 위한 일시적 해외 체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의 해외이주는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생계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해외이주는 취업이나 교육 및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이주 등 그 목적이 다양함
 - 과거의 해외이주는 국외로의 이주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해외로 이민을 갔던 세대가 은퇴 후 다시 국내로 이주(역이민)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만명 이상이 이주하였으나 2003년 9,509명, 2010년 889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에서 국내로 역이주한 교포는 2003년 2,962명에서 2011년 4,257명으로 43% 급증하였음

-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 중 하나로 퇴직연금과세 제도를 들 수 있음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퇴직연금과세는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부터 연금급여 수령 시점까지 장기에 걸쳐 과세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에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세혜택의 방식이 국가마다

1) 이규용 · 배규식 · 유문희 · 차홍화(2012), p. 2

다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이동이 있을 경우 일관된 조세지원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임

-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해외파견 근로자의 퇴직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처리임²⁾
 -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일정기간 동안 파견된 파견국(이하 파견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모국으로 돌아와 은퇴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국에서 유지하고 있던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국 세무목적상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모국에서의 조세지원 효과가 사라지고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 또 다른 문제로서 해외이주를 통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의 과세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즉, 국내이주를 통해 거주자가 되어 해외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국외이주를 통해 모국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임
 - 이에 대하여, 2005년 이전까지의 OECD 모델조약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연금발생의 원천이 있는 국가(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음
 - 우리나라 근로자가 퇴직 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비과세)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반대로 국외 거주자가 퇴직 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로부터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하지 못

2)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일정 금액으로 본문에서는 사용자 연금보험료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함

하는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조사하는 데 있음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연금제도에 근로자가 가입하는 형태(기업연금)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개인연금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 형태로 운영되는 세제적격 퇴직연금으로 범위를 한정함
 - 다만 개인연금이더라도 사용자 보조가 있는 형태의 연금은 연구범위에 포함함
 - 국제적 이동이 있는 근로자의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상호 면제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 퇴직연금 과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국제이동 근로자와 관련된 연금과세 규정 및 조세조약 내용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시함
 - 제III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에서의 내국세법 및 조세조약상 국제이동 근로자의 연금과세 관련 규정을 제시함
 - 제IV장에서는 각 국가의 퇴직연금과세제도와 국제이동 근로자의 연금과세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II.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1. 퇴직연금제도

가. 연금제도 체계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3층제도로써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그리고 개인연금이 3층을 구성하고 있음³⁾
 - 1층의 공적연금은 민간부문의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됨
 - 공적연금은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가입자로 포괄하고 있음
 - 2층의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하여 통합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3층의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 노후보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

3) 이용하(2011), p. 3

[그림 II-1] 한국의 연금체계



자료: 이용하(2011)의 <그림 1>에서 수정

나. 퇴직연금제도⁴⁾

-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임
-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음
 - 기존의 퇴직금제도⁵⁾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고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고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에

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자료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5)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의제도로써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하였으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10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⁶⁾
 -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음
 - 퇴직연금제도⁷⁾는 법정퇴직금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은 없음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⁸⁾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음⁹⁾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임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함

7)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연금제도, 확정기여형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7호)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7호~제10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음
 - 또한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됨
 -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함
 -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준용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¹⁰⁾
 -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개인퇴직계좌(IRA)에서 변경된 것임
 - 개정 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았다가 근로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¹¹⁾고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10)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로써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를 생략함

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로 옮기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하에서 받은 퇴직급여도 IRP로 이전할 수 있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도 재직중에 계좌를 개설해 추가 납입할 수 있음
-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다. 퇴직연금제도 운용 현황

- 퇴직연금제도 운용 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 67조 3,459억원 중 확정급여형 연금의 적립액이 49조 6,987억원으로 적립액의 약 73.8%가 확정급여형으로 적립·운용되고 있음
 - 확정기여형제도와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의 적립금은 각각 17.8%와 8.5%를 차지하고 있음
 - 제도의 도입 이후 최근까지 가입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퇴직급여 수령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전체 수급자 중 97.4%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였고 2.6%만이 연금형태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년도 퇴직급여 수령 현황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은 파악이 어렵지만 2012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연금형태 수령자가 2.1%에서 3.4%로 소폭 증가하였음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표 II-1〉 퇴직연금제도 운용 현황

(단위: 천명, 개, 억원, %)

	가입자 수	사업장 수	퇴직연금 적립액				합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¹⁾ (IRA)		
					기업형	개인형	
2005	5	389	64 (39.0)	61 (37.2)	39 (23.7)	-	163 (100.0)
2006	213	n.a.	5,020 (66.3)	2,006 (26.5)	508 (6.7)	33 (0.4)	7,568 (100.0)
2007	538	29,317	18,276 (66.3)	7,033 (25.5)	1,315 (4.8)	927 (3.4)	27,550 (100.0)
2008	1,120	48,714	45,818 (69.3)	16,141 (24.4)	2,688 (4.1)	1,474 (2.2)	66,122 (100.0)
2009	2,481	79,501	100,730 (71.7)	29,833 (21.2)	3,762 (2.7)	6,134 (4.4)	140,459 (100.0)
2010	2,394	94,455	209,826 (72.0)	51,530 (17.7)	5,395 (1.9)	24,720 (8.5)	291,472 (100.0)
2011	3,284	139,151	375,394 (75.2)	81,070 (16.2)	6,093 (1.2)	36,610 (7.3)	499,168 (100.0)
2012	4,377	203,488	496,987 (73.8)	119,555 (17.8)	6,641 (1.0)	50,277 (7.5)	673,459 (100.0)

주: 1. () 안은 비중임

1)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개인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표 II-2〉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명, 억원, %)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합 계	
	수급자 수	금 액	수급자 수	금 액	수급자 수	금 액
2012년 상반기	71,597 (97.9)	7,709 (99.8)	1,501 (2.1)	19 (0.2)	73,098 (100)	7,728 (100)
2012년 하반기	55,791 (96.6)	6,437 (99.6)	1,955 (3.4)	26 (0.4)	57,746 (100)	6,463 (100)
2012년	127,388 (97.4)	14,147 (99.7)	3,456 (2.6)	45 (0.3)	130,844 (100)	14,192 (100)

주: 1. 동 자료는 '11.10월부터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분석이 불가함

2.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2. 퇴직연금 과세제도

가. 과세체계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① 연금보험료 납입 단계, ② 적립금의 운용수익 발생 단계, ③ 퇴직급여 수령 단계의 3단계로 파악하여야 함
 - 각 단계에서의 과세 여부(Taxed 또는 Exempt)에 따라 다양한 연금과세 체계가 가능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에 소득공제(Exempt),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는 비과세(Exempt)하고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과세(Tax)하는 'EET형'임
 - 연금보험료 납부 단계에서는 과세(Tax)하고 운용수익 발생 단계와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비과세(Exempt)하는 'TEE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EET형' 과세체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납부 시점과 적립금 운용 시점에서는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퇴직급여 수령 시에 과세하는 'EET형' 체계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부담금 적립 단계에서 전액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되고,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이지만 적립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EET형은 아니고 EET형과 TEE형이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음

〈표 II-3〉 퇴직연금 과세체계

연금보험료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사용자 부담금> - DC형: 전액 손금산입 - DB형: 한도금액 손금산입 -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 하지 않음	비과세	- 소득의 유형: 연금소 득 ²⁾³⁾ - 과세방법: 원천징수 ⁴⁾ 하고 종합과세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 ⁵⁾	- 소득의 유형: ① 과세이연퇴직소득: 퇴직 소득 ② 과세이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 - 과세방법: ①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분류과세 ② 기타소득: 20% 원천징 수하고 종합과세
<근로자 부담금> - 소득공제: 공제한도 400만 원 ¹⁾			

- 주: 1)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통합한도임
 2) 연금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합계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 최고금액은 900만원임
 3) 과세이연된 금액에 한함
 4) 원천징수 세율은 수급자 연령 및 수급 구분에 따라 3~5% 적용
 5) 사적연금소득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나. 연금보험료 납부 단계

1) 사용자 부담금

-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퇴직연금 사용자 부
 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함¹²⁾
 -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 등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
 원이나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보험회사 등)에
 게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함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의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함¹³⁾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② 동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없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에서 제외함
 -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규정¹⁴⁾을 적용함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의 경우 법인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급여 수준(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근로자 전체 계좌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법인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퇴직급여 추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 등에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① 및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에
-
-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동 시행령 제60조 제1항
-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② ①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서 ③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¹⁵⁾

○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한도 = Max[①, ②] - ③

- ①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¹⁶⁾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¹⁷⁾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 ②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¹⁸⁾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 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과세이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은 2013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은 세법개정을 통해 2013.1.1.부터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음
- 동 개정이 의미하는 바는 과세소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부담 연금보험료는 퇴직급여의 수령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가 이연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임¹⁹⁾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16)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

1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름

19) 세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었음(「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너목). 개정세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을 비교

〈표 II-4〉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세제

구분		연금보험료 손금산입	근로소득 포함여부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전액 손금산입	불포함 (과세이연)
사적 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연금(IRP)	전액 손금산입	불포함 (과세이연)
	확정급여형(DB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손금한도 = Max [①, ②] - ③ ①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기말퇴직급여충당금 잔액 ②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기말퇴직급여충당금 잔액 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불포함 (과세이연)

2) 근로자 부담금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함²⁰⁾
- 다만,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²¹⁾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함
 - 연금보험료 공제²²⁾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20)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및 제3항

퇴직연금의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만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1호).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 있음

21) 다음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②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2)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의 공제액(전액공제)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의 공제액(400만원을 한도로 공제)을 의미함

대한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표 II -5〉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

구분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공적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통합한도)
	퇴직연금계좌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액	

- 2013.1.1. 세법개정으로 기존의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통합하였음
 - 개정 전에는 사적연금의 유형을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으로 구분하였음
 - 개정세법에서는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① 연금저축계좌, ②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함
 - 종전의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됨

다. 운용수익 발생 단계

-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함
 -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

라. 퇴직급여 수령 단계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유

형이 달라짐²³⁾

- 연금계좌평가액 중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이연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금액과 운용수익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표 II-6〉 인출형태에 따른 과세 방법

구분		과세방법
연금계좌 평가액	과세금액	-
	과세이연 금액	과세이연 퇴직소득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금액
		적립금 운용수익
		인출시: 소득세 과세제외
		연금수령: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외수령: 퇴직소득으로 과세
		연금수령: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으로 과세

1) 연금수령의 경우

가)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소득으로 이루어짐²⁴⁾

- ① 공적연금 관련법²⁵⁾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적연금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²⁶⁾하는 경우의 연금(사적연금소득)
- ③ 상기 ②와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²⁷⁾

23)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연금수령한도 초과 또는 일시금)은 ‘연금외수령’이라 함

24)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25)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26) 연금 형태로 인출함으로써 개별 원천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됨

27)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없음

(1)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산출 과세기준금액²⁸⁾에서 과세제외기여금²⁹⁾ 등을 차감한 금액임³⁰⁾

○ 국민연금 및 연계노령연금³¹⁾의 과세기준금액:

$$\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text{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³²⁾
-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전년도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월평균소득)을 말함

○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³³⁾의 과세기준금액:

$$\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text{총 기여금 납입월수}}$$

28)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29) 과세제외기여금 등이란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의미함.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30) 2002년을 전후로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음
 - 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불인정, 급여 수령 시(연금, 일시금) 과세하는 형태
 - 2002년 1월 1일 부터는 연금보험료 납입 시 전액 소득공제, 급여 수령 시 과세(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

31)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3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각종 연금

(2) 사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이란 소득세 과세가 이연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임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 즉,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거나(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포함)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퇴직 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의미함
 -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 － 즉,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것을 의미함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 적립금의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됨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³⁴⁾
- 연금계좌³⁵⁾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의미함³⁶⁾
 -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및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³⁷⁾
 -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34)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없음

35) 종전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그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을 규정하였음. 연금계좌 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36)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37)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

- 퇴직연금계좌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거주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해당 계좌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임
- 사용자의 사외적립자산에 속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연금계좌’는 종전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합하여 칭하는 용어로 2013.1.1 세법개정을 통해 법령에 도입되었음

- 연금계좌의 도입과 더불어 가입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음
-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이내의 연금보험료(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의미함)를 납입할 수 있고³⁸⁾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음³⁹⁾
 - 2013.1.1. 세법개정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추가납입 불가 요건이 추가되었음

〈표 II-7〉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비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개정 전)	연금계좌(개정 후)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저축: ①+② 퇴직연금: 세법상 요건 없음 ①최소납입기간: 10년 이상 ②납입한도: 연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①+②+③ ①최소납입기간: 5년 이상 ②납입한도: 연 1,800만원 (분기한도 폐지) ③연금수령 개시 후 추가납입 불가

38)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나) 연금소득금액의 산출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임⁴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공적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⁴¹⁾은 제외)에서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뺀 금액임
 - 선택적 분리과세에 의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총 연금액에서 제외함
 -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구간별로 연금소득공제액을 설정하고 있음⁴²⁾
 -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함

〈표 II-8〉 연금소득공제액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¹⁾

주: 1)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

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원천징수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40)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41) 비과세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음

-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③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42) 「소득세법」 제47의2 제1항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⁴³⁾

-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에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함
 - 이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임
 -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 기 원천징수한 세액 = (+) 원천징수
(-) 환급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함
 - 소득세 결정세액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면 추가 원천징수금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됨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및 소득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⁴⁴⁾
 - 연금소득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 80세 이상인 경우 3%의 세율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의 세율 적용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의 세율 적용
 - 상기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4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4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표 II-9〉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세율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 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80세 이상 :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하는 연금소득	3%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 ¹⁾ 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

주: 1. 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 1)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연금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방식임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닌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함
 -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⁴⁵⁾
- 사적연금소득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함
 - 즉,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⁴⁶⁾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함⁴⁷⁾

45)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46) 2013.1.1. 개정 전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판단할 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였으나, 연금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였음(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47)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라)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함⁴⁸⁾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한 날
 - 그 밖의 연금소득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은 수입시기가 연금외수령일임

2) 외금외수령의 경우

-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연금외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함⁴⁹⁾

- 퇴직소득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소득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의미함

- 퇴직소득은 근속기간에 걸쳐 받을 보수를 퇴직 시 일시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함
 -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음⁵⁰⁾

48)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2013.1.1 개정 전에는 연금 유형과 무관하게 지급받기로 한 날을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였음

49)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는 15%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분리과세함

50)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임상엽·정정운(2013), pp.910~918에서 정리함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	퇴직소득 결정세액

□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함⁵¹⁾

○ 단,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함

□ 퇴직소득공제는 소득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순서대로 공제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함⁵²⁾

○ 소득비례공제액 = 퇴직소득금액 × 40%

〈표 II-10〉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퇴직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므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분연승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함⁵³⁾

5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

52)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53)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2012.12.3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 퇴직한 경우

<p>퇴직소득 산출세액 =</p> $2012.12.31 \text{ 이전 } \left[\left(\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frac{1}{\text{근속연수}}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right]$ $+ 2013.1.1 \text{ 이후 } \left[\left(\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frac{5}{\text{근속연수}}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frac{\text{근속연수}}{5} \right]$
--

$2012.12.31 \text{ 이전 퇴직소득 과세표준} =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frac{2012.12.31\text{까지의 근속연수}}{\text{전체 근속연수}}$
$2013.1.1 \text{ 이후 퇴직소득 과세표준} =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 2012.12.31 \text{ 이전 퇴직소득 과세표준}$

○ 2013.1.1 이후 근무를 시작하여 퇴직한 경우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left[\left(\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frac{5}{\text{근속연수}}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frac{\text{근속연수}}{5} \right]$
--

-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⁵⁴⁾
-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 다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제외)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님⁵⁵⁾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54)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5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실제 인출될 때까지는 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데, 이러한 퇴직소득을 ‘이연퇴직소득’이라 함

3.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및 문제점

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과세

-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신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견된 직원들이 모국으로 돌아와 퇴직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국에서 제공받던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파견근로 기간에도 계속해서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해외에서 근무하는 해외파견 근로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모국의 연금과세체계 내에서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모국 또는 파견국에서의 내국세법상 처리규정의 미비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된 파견근로자와 외국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각각의 경우에 퇴직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봄

1) 해외파견 근로자

- 해외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용자 부담금이 해외파견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조세조약 또는 파견국의 내국세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음

-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모든 대가’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금도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에 포함됨
 - 근로소득은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그 원천이 있는 것이므로 용역 수행지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할 수 있음⁵⁶⁾
 - 따라서 파견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당해 소득의 지급지(모국, 또는 파견국)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됨
 - 사용자 부담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납부 시점에서의 과세이연이라는 조세혜택 효과가 상실됨

- 내국세법상 해외파견근로 기간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모국(한국)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함
 - 사용자 부담금을 모국(한국)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 모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유권해석⁵⁷⁾에 따르면, 국내 모법인이 지출한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산입이 부인

56) 조세조약에서는 국제경제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83일 미만 단기 체류자 등 특정한 경우 용역 수행지국에서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57) <조심2009중1822, 2010.11.03>

-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파견 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였고 경영자문료로 계상한 경우임
-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에 고용된 것으로 외국인 취업증에 나타나는 점, 현지법인이 파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점, 파견 직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현지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현지법인이 파견 직원의 사용자로서 쟁점급여의 지급의무자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될 가능성도 있음

- 국내 모법인이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 제공한 급여 중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 파견 직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현지법인인 점과 현지법인이 파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에서의 조세혜택(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 만일 사용자 부담금을 파견국(외국)에서 부담하는 경우, 파견국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파견국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리규정을 조세조약에 둘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사용자 입장에서 손금산입이 부인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효과가 사라지게 됨

- 만일 연금 수령 시점에 이미 과세된 부분이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 기간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 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납부세액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동일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 규정은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에 관한 규정은 없고 퇴직보험료 납부시기와 연금 수령시기의 귀속연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정이 어려움

2)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 외국 모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외파견 근로자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모국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 지급지가 모국(외국)이든 파견국(한국)이든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용역수행지인 한국에서 과세함
 -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임
 - 예규에 따르면⁵⁸⁾, 한국 파견국에서 부담한 연금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조약에서도 근로소득의 경우 당해 근로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⁵⁹⁾⁶⁰⁾
 -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외국) 연금과세제도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부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세이연의 조세혜택이 사라지게 됨

58) <소득세 원천세과-5, 2010.01.04>

- 일본에 본사가 있는 한국 현지법인으로 본사로부터 주재원이 출항되어 일정기간(1년 이상) 근무 후 모국으로 출국한 사례임
- 한국 현지법인이 출항자의 급여를 100% 부담하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의무사항이며 월할계산된 퇴직연금이 일본 본사로부터 매월 청구되어 익월에 송금된 경우, 본사에 지급하는 출항자 퇴직연금 납부액의 소득구분과 모국 가입 퇴직연금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해외 모법인(일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한국)이 모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모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함

59) 이용섭·이동신(2012), p.710

60)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서 가입한 퇴직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파견국(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예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 최근에는 근로 제공을 위한 일시적 해외 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이주에 있어서 이주 국가 및 이주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고 국외로의 이주는 감소하는 한편 국내로의 이주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과거의 국외이주는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생계형이 많았다면 최근의 국외이주는 취업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위해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이주 선호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외에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의 비중이 늘고 있음
- 최근 해외이주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로의 역이민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2년 해외이주 신고자는 753명으로 해외이주가 정점에 달했던 1976년 4만 6,533명 대비 1.6% 수준임
 -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나 2003년 9,509명,

조세조약 체결국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한국에서 면세
미국	- 당해 과세연도 중 한국에 183일 미만 체재할 것 - 당해 용역이 미국 거주자의 피고용인에 의해서 제공될 것 - 고용주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일본, 프랑스, 태국, 영국 등 69개 국가	- 당해 연년 중 한국에 183일 이하 체재할 것 - 당해 근로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을 것 - 고용주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이 부담되지 않을 것

2010년 889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에서 국내로 역이주한 교포는 2003년 2,962명에서 2011년 4,257명으로 43% 급증하였음⁶¹⁾

-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역이민자의 상당수가 직장을 은퇴한 60대 이상의 노령 자임을 고려할 때 국내거주자로서 해외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들에 대한 과세문제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입장과 비거주자의 입장에서 살펴봄⁶²⁾

-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국내이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한국거주)로서 이전 거주지(외국)로부터 연금소득을 수령하게 됨
 -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는 비거주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거주자로서 외국으로부터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임
- 국내에서 국외로 이주(국외이주)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외국거주)로서 이전 거주지(한국)으로부터 연금소득을 수령하게 됨
 - 국내에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비거주자로서 한국으로부터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임

□ 연금소득 과세와 과세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연금의 수령 시점에 거주지가 달라짐으로 인해 연금의 지급지와 수령지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수령지(현 거주지)와 지급지(이전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연금 부담금에 대해 대부분 국가에서 세제혜택(과세이연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과거에 과세이연된 부분에 대하여 연금수령 시점에 과세되지 못하거나 납부 시점에 이미 과세되었음에도 연금수령 시점에 다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⁶³⁾

61) 역이민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122명, 캐나다 693명, 중남미지역 국가 629명 등임

6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63) 조세지원체계의 차이로 과세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부담금 납부 시점(이전 거주지국)에 과세를 이연하였는데(EET 방식) 연금수령 시점(현 거주지

- 상기 과세권 배분의 문제와 서로 다른 조세지원체계로 인한 문제는 상호 복합적으로 발생함

1) 거주자로서 국외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거주자(국외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수령 시점에 국내로 이주한 경우)로서 국외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상 과세규정과 조세조약상 과세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내국세법상 국외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규정은 없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대부분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⁶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
 - 태국, 싱가포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1992년 개정 전 조약),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과의 조세조약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가 모두 가능함
 - 조세조약상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국)에 연금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TEE 방식)에는 과세가 되지 않음

- ② 부담금 납부 시점(이전 거주지국)에 과세를 하였는데(TEE 방식)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수령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EET 방식) 이중과세가 발생함

64) 한·미조세조약 제23조 [민간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979.10.20)

- (1)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계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2) 일방 계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별거수당과 보험연금은 동 일방 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3) 본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라 함은 (a)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 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지급금을 의미한다.
-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보험연금"이라 함은 적당하고 충분한 대가의 대상으로(제공된 용역에 대한 것을 제외함) 지급의무에 따라 생존기간 또는 특정 연한 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 (5) 본조에서 사용되는 "별거수당"이라 함은 이혼명령, 별거수당 합의서, 부양 또는 별거합의서에 따른 정기적 지급금으로서 수취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계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 수취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⁶⁵⁾

〈표 II -11〉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에서 과세	원천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스,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영국, 에스토니아,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벨기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체코, 카타르, 캐나다 ¹⁾ , 태국, 우루과이	칠레, 파나마, 바레인

주: 1) 캐나다는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을 허용함
 Min15%, 연금 수취자가 발생국의 거주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율
 자료: 이용섭·이동신(2012), p.372에 2013.8. 현재 조세조약 체결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하여 연금 발생의 원천이 있는 국가(원천지국)에서는 비과세하고 거주지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⁶⁾

○ 이는 연금은 일반적으로 노후에 취득하게 되므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연금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과중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연금 취득자는 자국에서 과세가 면제되거나 또는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

65) 〈국업 46017-24, 2000.1.13.〉

- 질의: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포가 한국에 돌아가서 노년생활을 보내려고 하는데, 동 교포의 소득은 퇴직한 회사에서 주는 연금을 한국에서 송금받아 생활할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회신: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교포가 역이민하여 국내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미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66) 이용섭·이동신(2012), pp. 373~374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외국세액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임

- OECD는 2005년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를 개정하여 연금 수취자의 소득발생지국에서도 제한세율(예: 15%)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는 퇴직 후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이전 거주지국에서 부담금 납입단계에서 조세혜택(EET 방식)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담금 납입단계에 과세이연(소득공제)의 조세혜택을 향유하고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중면세가 발생함

2) 비거주자로서 국내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비거주자(거주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 시점에 국외로 이주)로서 국내로부터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임
 - 국내법상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조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법상으로는 이중면세 또는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대국가의 비거주자에 대한 것이고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체결 상대국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는 과세권이 없음
 - 따라서 원천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거주지국 과세원칙’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이주하여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게 됨

- 우리나라의 국내법상 연금소득은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에 과세이연(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식(EET형)이므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퇴직 후 거주지국 과세원칙(EET형)에 따라 과세하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향유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Ⅲ. 주요 외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 일본

가. 연금제도 체계

- 일본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을 기초로 하여 피용자 연금, 기업연금의 3단계 체계로 이루어짐⁶⁷⁾
 - 1층 부분은 전 국민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며,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된 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기초연금’이라 함
 - 2층 부분은 국민연금의 상충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수비례연금을 지급하는 ‘피용자 연금’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 있음
 - 3층 부분을 이루는 것이 ‘기업연금(퇴직연금)’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생연금 기금, 확정각출연금, 확정급부기업연금이 있음⁶⁸⁾

- 자영업자나 농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만 가입하지만, 민간 피용자 및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추가하여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에 가입하여야 함
 - 민간 피용자의 상당수는 후생연금이나 적격퇴직연금 등 기업연금에도 가입함

-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피용자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과 공제연금(특수직역)임⁶⁹⁾

67) 일본 厚生労働省(<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01/01-01.html>)

68) 기업연금에는 ‘적격퇴직연금’도 있었으나 이는 2012년 3월 31일부로 폐지되었음. 폐쇄형적격퇴직연금계약의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후생연금보험 미적용 사업소의 사업주가 체결한 것은 적격퇴직연금계약과 관련된 세제상의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됨
 -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자영업자, 피용자의 배우자, 학생 등임⁶⁹⁾
- 5인 이상의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층의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을 가입할 경우 1층의 국민연금(기초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초)과 2층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보험료 방식으로 부과되어 납입하는 보험료가 각각의 연금재정에 충당됨
- 사적연금체계는 임의제도로 운영되며, 퇴직급여제도로써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됨⁷¹⁾
 - 퇴직연금제도는 민간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로써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1930년대의 노동운동 이후 관행상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⁷²⁾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연금으로서 세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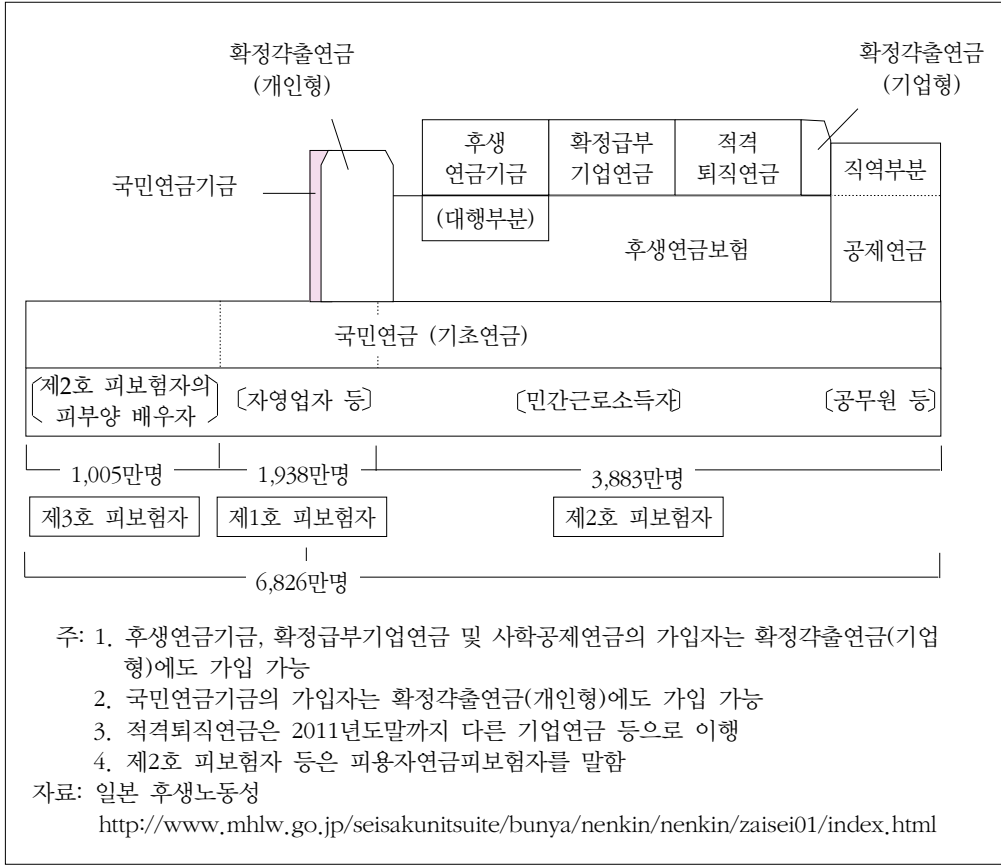
69) 이상우·오병국(2012), pp. 17~20

70)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영업, 농업종사자 등의 경우 2012년 4월 말 기준 월 14,980엔의 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매년 상향조정됨

71) 이 외에도 국민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금공제 등 다양한 직역연금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생략함

72) 이상우·오병국(2012), p. 21

[그림 Ⅲ-1] 일본의 연금체계



나. 퇴직연금제도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상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특징임⁷³⁾
 -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은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행상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의 인사원(2012.3)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9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73) 이상우 · 오병국(2012), p. 21

- 2000년대 초에 확정급부기업연금과 확정각출연금이 도입되기 전까지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퇴직연금제도로써 운영되었으나 적격퇴직연금제도가 2012년 3월 폐지됨에 따라 현재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인 ①후생연금기금제도와 새로 도입된 ②확정급부기업연금제도 및 ③확정각출연금제도의 3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표 Ⅲ-1〉 일본의 현행 퇴직연금 유형

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부형(DB형)	
	확정각출연금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근거법	확정각출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도입시기	2001년	1966년	2002년
가입대상	기업형: 근로자 개인형: 자영업자, 기업연금 없는 기업종사자	근로자	근로자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kyoshutsu/gaiyou.html>

- 후생연금기금제도는 일본 기업연금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로서, 노령후생연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함(급부대행)과 동시에 기업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추가 급여(퇴직급여 등)를 지급함으로써 종업원에 의한 추가적인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함
 - 2003년 9월부터는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 제정에 의해 대행 부분을 국가에 반환(대행 반납)하고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행하는 것도 인정됨
- 확정급부기업연금제도(Defined Benefit Corporate Pension Plan)는 후생연금기금과 달리 국가의 후생연금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의 연금 혜택만을 실시하는 제도임
 - 후생연금기금제도는 노령후생연금의 대행급부가 있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최근 자산 운용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대행을 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유연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노사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수급권 보호 등을 확보한 기업연금제도로써 2002년 4월에 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음

□ 확정각출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은 각출되는 납부금이 개인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납부금과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연금제도이며, 2001년 10월부터 도입되었음

다. 퇴직연금 과세제도⁷⁴⁾

□ 후생연금기금제도, 확정급부기업연금제도나 확정각출연금제도 등의 기업연금 제도에 출연하는 사업주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100% 손금으로 처리되고⁷⁵⁾ 근로자가 부담한 부담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됨

○ 이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유력한 제도로써 기업연금을 보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근거 법령 등의 규제에 적합한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과세제도는 부담금의 납부 단계, 적립금의 운용 단계 그리고 퇴직급여의 수령 단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함

74) http://www.tr.mufg.jp/houjin/jutaku/yougo_kensaku/column/column_07.html

75) 법인세법 제74조

〈표 Ⅲ-2〉 일본의 퇴직연금 과세체계

제도명	보험료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	
			연금	일시금
후생연금기 금	〈사용자 부담금〉 - 손금산입: 전액(비과세) - 근로자의 급여로 보지 않음 ----- 〈근로자부담금〉 - 소득공제: 전액 사회보험료공 제(비과세)	실질비과세 - 적립금 중 대행부분의 3.23배를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해 1.173%의 특별법인세 과세 ³⁾ -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 과세	감소소득으로 과세 ¹⁾	퇴직소득으로 과세 ²⁾
확정급부기 업연금	〈사용자 부담금〉 - 전액 손금산입(비과세) - 근로자의 급여로 보지 않음 ----- 〈근로자부담금〉 - 소득공제: 4만엔 한도(실질 과세)	적립금 중 근로자부담분 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 여 1.173%의 특별특별법 인세 과세 ³⁾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감소소득으로 과세 ¹⁾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²⁾
확정각출연 금 (기업형)	〈사용자 부담금〉 - 전액 손금산입(비과세), 납부 한도 있음 ⁴⁾ - 근로자의 급여로 보지 않음 ----- 〈근로자부담금〉 - 소득공제: 전액 소규모기업공 제, 납부한도 있음(비과세)	적립금에 대해 1.173% 특별법인세 과세 ³⁾	감소소득으로 과세 ¹⁾	퇴직소득으로 과세 ²⁾

주: 1) 공적연금 등 공제 있음
 2) 퇴직소득공제 있음
 3) 2014년까지 과세동결
 4)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 월 25,5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51,000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kyoshutsu/gaiyou.html>

1) 연금보험료 납부 단계

□ 기업연금제도에 출연하는 납입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근로
 자 부담금은 전액 또는 일정 범위에 한해 소득공제함

-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지원이 적용됨⁷⁶⁾
 -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74조에 따라 기업의 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됨
 - 근로자 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사회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되지만 근로자부담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함⁷⁷⁾
 - 근로자 부담금은 생명보험료 공제제도의 대상임
 - 생명보험료 공제제도에는 일반생명보험료(보장성 보험), 건강·간병보험료, 연금보험료로 구분되며, 각각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음⁷⁸⁾⁷⁹⁾
 - 연금보험료공제는 개인연금 및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확정각출연금의 개인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님
 - 연금보험료공제 한도액은 2011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하는 공제액은 50,000엔을 한도로 하였으나, 2012년 1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하는 공제액은 40,000엔을 한도로 함
 - 사업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76) 이상우·오병국(2012), p.71

77) 이상우·오병국(2012), p.120

78)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41.htm>

79) 일반생명보험료, 건강·간병보험료, 연금보험료 각각 4만엔을 한도로 하여 생명보험료 총한도는 12만엔임(<http://www.taiyo-seimei.co.jp/topics/hokenryokoujo.html>)

〈표 Ⅲ-3〉 일본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¹⁾

2011.12.31 까지 계약분		2012.1.1 이후 계약분	
연간보험료	공제액	연간보험료	공제액
25,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²⁾ 전액	2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전액
25,000엔 초과 5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 1/2 + 12,500엔	20,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 1/2 + 10,000엔
50,000엔 초과 10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 1/2 + 25,000엔	40,000엔 초과 8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 1/4 + 10,000엔
100,000엔 초과	50,000엔	80,000엔 초과	40,000엔

주: 1) 복수의 보장 내용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주된 보장 내용에 따라 공제를 적용함

2) 납입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금액에서 잉여금과 반환금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40.htm>

□ 확정각출형연금은 기업형과 개인형이 있음

- 확정각출형연금(기업형)의 사용자 부담금은 법정부담금 납부한도 내에서 전액손금 산입함
 - 법정 부담금 납부한도는 근로자 1인당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는 월 25,500엔, 없는 경우는 월 51,000엔임
- 2012년부터 확정각출형연금(기업형)에 근로자의 매칭기여가 허용되면서 부담금 납부 한도의 50%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함⁸⁰⁾
- 확정각출형연금(기업형)의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확정각출형연금(개인형)은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용자 각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형과는 차이가 있음
 - 확정각출형연금(개인형)의 부담금도 소규모기업공제로서 전액 소득공제하지만 출자한도가 있음
 - 출자한도액은 자영업자 월 6,8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근로자 월 23,000엔임

80) 이상우 · 오병국(2012), p. 151

〈표 Ⅲ-4〉 일본의 퇴직급여 부담금에 대한 과세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후생연금기금	전액 손금 산입	전액 소득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불포함
확정급부기업연금	전액 손금 산입	한도 금액 ¹⁾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불포함
확정각출연금 (기업형)	전액 손금 산입 ²⁾	전액소득공제 (소규모기업공제부담금공제)	불포함

주: 1) 연간 최고 40,000엔 한도

2)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는 월액 25,500엔, 없는 경우는 월 51,000엔이 출자 한도임

자료: 일본 노동후생성,

<http://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kyoshutsu/gaiyou.html>

2) 운용수익 발생 단계

- 후생연금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노령후생연금(대행 부분)에 상당하는 액수의 3.23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173%의 특별법인세가 매년 과세됨
 -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과세된다고 할 수 있음

-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각출연금(기업형·개인형)에 관해서는 그 적립금에 대해 매년 1.173%의 특별법인세가 과세됨
 - 특별법인세는 부담금 상당액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고 퇴직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것에 대한 연체세로서 기업연금제도 도입 시에 신설된 세금임
 - 단, 2014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과세 동결)

3) 퇴직급여 수령 단계⁸¹⁾

- 연금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통상 잡소득⁸²⁾으로 구분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구분함

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 다음의 공적연금 등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잡소득으로 과세함⁸³⁾
 - ①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공무원 등의 공제조합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연금
 - ② 과거의 근무에 의해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일시연금 제외)
 - ③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 규정을 근거로 지급받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연금
 - ④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제도로 ①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 또는 공제제도와 유사한 것
- 잡소득으로 구분되는 공적연금 등의 소득금액은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후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 =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 비율 × 공적연금 등 공제액
 - 비율 및 공제액은 수입금액과 연금수령자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잡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공적연금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 있는 자의 생계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필요경비 대신 공적연금 등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81)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600.htm>

82) 공적연금 등에 관한 소득은 1987년 세제개정 이후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및 소득세법상 정해진 9종류의 소득구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잡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

83) 공적연금 등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음

〈표 Ⅲ-5〉 일본 공적연금 등의 소득 산출 시 적용되는 비율 및 공제액

(단위: 엔, %)

연금수령자 연령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비율	공적연금 등 공제액
65세 미만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700,000엔 이하는 소득금액은 0임		
	700,001~1,299,000	100	700,000엔
	1,200,000~4,099,999	75	375,000
	4,100,000~7,699,999	85	785,000
	7,700,000 이상	95	1,555,000
65세 이상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1,200,000엔 이하는 소득금액은 0임		
	1,200,001~3,299,999	100	1,200,000
	3,300,000~4,099,999	75	375,000
	4,100,000~7,699,999	85	785,000
	7,700,000 이상	95	1,555,000

주: 예를 들면, 65세 이상인 자의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이 350만엔인 경우 공적연금 등에 의한
 잡소득 금액은 225만엔(3,500,000엔 × 75% - 375,000)임
 자료: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600.htm>

공적연금 등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연금소득 금액에 5.105%를 금액을 원천징수함

○ 2013.1.1부터 소득세 5%에 0.105%의 부흥특별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됨

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50%임⁸⁴⁾

○ 퇴직소득금액 = (수입금액(원천징수 전 금액) - 퇴직소득공제) × 50%

– 적격퇴직연금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함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등의 금액을 뺀 잔액을 퇴직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함

84)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420.htm>

- 퇴직소득공제액(근속연수 20년 이하): 40만엔 × 근속연수(80만엔에 미달하면 80만엔)
- 퇴직소득공제액(근속연수 20년 초과): 800만엔 + 70만엔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 퇴직소득 등의 지불 시에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불자가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퇴직수당 등의 지급시 정규의 소득세 환급액이 원천징수되므로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필요없음
-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등의 지불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되지만,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액을 계산함

라.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1)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과세

- 일본의 내국세법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파견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국세법상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소득은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歳費), 상여, 기타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로 정의하고 있음⁸⁵⁾
- 조세조약을 근거로 파악하면,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사용자 부담금은 해당 파견근로자의 보수에 포함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국가에서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그 지급지(파견국 또는 모국)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국가(파견국)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

85) 소득세법 제28조

- 해외파견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내국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음
 - 해외파견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경우 또는 모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 해당 비용을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파견국의 내국세법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것임
 - 그러나 모국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일본의 연금과세체계에서 연금보험료는 납부 시점에 대부분 비과세(사용자 입장에서 손금산입, 근로자의 소득에 불포함)되고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되는 EET형 과세방식인데, 해외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
 -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일시적 해외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과세 처리에 관한 논의가 아직 없는 상황이며 조세조약에서도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가) 거주자로서 국외로부터 연금 수령하는 경우

- 내국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으로서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연금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규정은 없음
 -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의 범위에 ‘외국의 법령에 근거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제도를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을 포함함
 - 이는 공적연금 성격의 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기업연금)을 국외로부터 수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규정은 없음

- 내국세법상 과세근거 규정은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일본에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세법상 과세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실무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나) 비거주자로서 국내로부터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

- 국외이주자의 경우 비거주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과세관계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음⁸⁶⁾
 - 거주자는 ①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 ② 일본 내에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의 거처를 가진 개인으로 정의하고 거주자 외의 개인(일본 내에 주소도 1년 이상의 주소도 없는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함⁸⁷⁾
 -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을 지불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음⁸⁸⁾
 - 비거주자가 항구적 시설(PE)을 갖는 경우 항구적 시설의 유형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⁸⁹⁾ 연금을 수령하는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항구적 시설이 없는 비거주자라고 가정함
- 항구적 시설이 없는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은 확정신고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되며,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은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어 지급 시점

86) 국외이주자의 연금소득과세는 일본 企業年金連絡協議会の 「海外移住者に係る年金等の税務」(<http://www.taxlabo.com/kokusaikazei/kaigaiijusya.html>)와 일본 국세청, 「非居住者又は外国法人に支払う所得の源泉徴収事務」(<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gensen/aramashi2009/data/10/>)에서 요약 정리함

87) 주소란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되며, 거소란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함

88) 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

89) 비거주자는 지점을 가진 비거주자, ②건설공사를 가진 비거주자, ③대리인이 있는 비거주자, ④항구적 시설이 없는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 과세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됨

- 확정신고 대상(종합과세) 소득은 자산의 운용·보유 소득 또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 국내에서의 인적서비스 제공 사업소득, 국내 부동산소득 등임
- 분리과세 대상 소득⁹⁰⁾은 지불 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과세 관계가 종결됨
 -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급여 및 기타 인적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것, ② 공적연금 등(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은 제외), ③ 퇴직수당 중 수령자가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근무 및 기타 인적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것임
 - 국외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일본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⁹¹⁾

□ 비거주자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세액 = 과세소득 × 20%
 - 65세 미만인 경우: 과세소득 = 지급되는 연금의 금액 - 1개월분 지급에 대해 6만엔
 - 65세 이상인 경우: 과세소득 = 지급되는 연금의 금액 - 1개월분 지급에 대해 10만엔

〈사례〉 월 15만엔의 연금을 3개월마다 지급

65세 미만인 경우: 과세소득 = (15만 × 3) - (6만엔 × 3) = 27만엔

원천징수세액 = 27만엔 × 20% = 5만 4천엔

65세 이상인 경우: 과세소득 = (15만 × 3) - (10만엔 × 3) = 15만엔

원천징수세액 = 15만엔 × 20% = 3만엔

□ 퇴직연금에 대하여 지불시 원천징수규정이 있더라도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하도록 조세조약이 체결된 상대국으로 지불되는 경우 과세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

-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이주 대상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90) 분리과세 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61조 제4호에서 제12호에서 열거하고 있음

91) 소득세법 제169조, 170조, 212조, 213조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의 경우,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주지 국가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본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태국과의 조약과 같이 퇴직연금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조세조약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 조약상의 기타소득조항에서 연금소득에 관한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을 수도 있으며, 기타소득조항도 없는 경우에는 일본의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짐

□ 비거주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일시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이 되며 소득 계산 방법은 거주자의 과세방법과 동일함

- 일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조항으로 과세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기타소득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함

〈표 Ⅲ-6〉 퇴직연금에 대한 일본의 조세조약 개요

	퇴직연금 과세원칙에 관한 규정
한국	거주지국 과세(18)
중국	거주지국 과세(18)
필리핀	거주지국 과세(18)
태국	규정 없음 → 원천지국 과세
호주	거주지국 과세(13)
뉴질랜드	거주지국 과세(9-1a)
미국	거주지국 과세(17)
캐나다	규정 없음 → 원천지국 과세
영국	거주지국 과세(19-1)
프랑스	거주지국 과세(18)
독일	거주지국 과세(18)
이탈리아	거주지국 과세(19)

- 주: 1. 2006년 1월 현재임
 2. 거주지국 과세는 해외 이주한 나라만 과세(일본 비과세)를 의미하며 원천지국 과세는 일본에서만 과세(거주지 국가 비과세)를 의미함
 3.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수령하는 공제연금은 포함되지 않음
 4. () 안의 숫자는 조세조약에서 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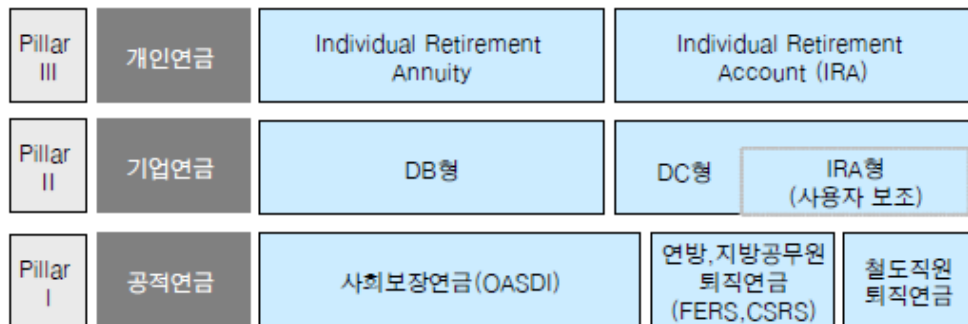
자료: 企業年金連絡協議会, 「海外移住者に係る年金等の税務」
 (<http://www.taxlabo.com/kokusaikazei/kaigaiijusya.html>)

2. 미국

가. 연금제도 체계

- 미국 연금제도는 1층 공적연금, 2층 기업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분류됨
 - 1층 공적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인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제도(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와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철도직원 퇴직제도, 구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의 제도가 직종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2층 기업연금(occupation pension)인 퇴직연금제도와 3층 개인연금으로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가 있음

[그림 Ⅲ-2] 미국의 연금체계(2009)



자료: 하나금융연구소(2009), 김진수·홍범교(2012) 재인용

-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면서 공적 연금인 OASDI가 도입됨⁹²⁾
 - 노인·유족·장애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92) 미국 연금제도(OASDI)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4_01_america.pdf

- 1972년 도입된 기초보장제도인 SSI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OASDI는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됨⁹³⁾

- 사회보장시스템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사적연금제도는 준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⁹⁴⁾
 -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인 기업연금(Occupation pension)으로 이해되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제공됨

-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이 제정된 후 퇴직연금제도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연금제도를 규제·감독함⁹⁵⁾

- 적격연금제도(Qualified pension plans)란 기업연금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조세지원 혜택을 받는 사용자 보조 퇴직연금 프로그램(employer sponsored pension plan)을 의미함⁹⁶⁾
 - 연금신탁제도, 금전구입제도,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종업원 지주제도, 401(k) 제도가 있음
 - 이외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키오플랜(Keoghs plan), 소규모 기업을 위한 SIMPLE (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개인연금제도인 IRA하에서 이용되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가 있음

93) OASDI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총소득의 6.2%, 사용자는 임금지급총액의 6.2%, 자영업자는 순수입의 12.4%임

94) 김대환·류건식·이상우(2011), p.63

95) ERISA는 주로 적격연금제도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의 비세제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연방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는 조세지원 적용을 위한 적격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적격요건들을 규정함

96) IRC 401(a)

나. 퇴직연금제도

- ERISA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제도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제도를 기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함
 - 개인연금제도 중 사용자 보조 IRA인 SEP IRA, SIMPLE IRA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속하다고 할 수 있음⁹⁷⁾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미래에 수령하는 근로자의 연금급여를 근무연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함
-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참여 근로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에 설정된 신탁에 정기적인 연금 부담금을 납부함
 - 근로자 개인별로 연금계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제도에 참여한 각 근로자는 확정 미지급 급여(the vested accrued benefit)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됨
 - 근로자가 은퇴 전에 이직하는 경우 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은퇴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확정 미지급 급여액은 신탁자산에 동결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에 적립된 자산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가 증가할 수 있음⁹⁸⁾
 - 2000년대 초반 추가하락으로 기업연금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연기금 및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비용 및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더 선호하게 됨

97) 이외에도 두 가지 제도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Hybrid)형 제도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98) 김대환·류건식·이상우(2011), p. 64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실화로 퇴직연금보험공사의 재정 악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 2006년 연금보험법(Pension Protection Act, PPA)이 제정됨⁹⁹⁾
 - PPA의 주된 내용은 연금수급권 보장, 연금부채의 정확한 산정,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가 있음

- 대표적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인 연금신탁제도는 사용자는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 금액의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여야 함
 - 사용자가 연금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Non-Contributory Pension Plan)와 근로자가 연금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Contributory Pension plan)가 있음
 - 사용자 부담금은 종업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이 허용됨
 - 그러나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개인연금 계정에 연금 부담금이 적립되는 형식이므로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음
 - 각 근로자별로 개인 계좌를 가지며 개인 계좌마다 연금 부담금, 계정에 배분되는 비용과 투자수익 및 연금급여가 종합적으로 관리됨
 - 연금 부담금의 납부는 구체적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시점의 연금 부담금은 확실히 이루어지나 은퇴 시점의 연금 급여수준은 보장되지 않아 투자위험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음

- 은퇴 이전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연금수급권을 개인 계정으로 이전

99) 퇴직연금보험공사 (Pension Benefit Guranty Corporation)는 기업연금 수급권 지급보증을 위하여 운용되는 지급보증제도임

(rollover)할 수 있는 통산제도가 적용되며, 연금 급여지급 형태는 일시금 지급, 분할지급, 가입자에 대한 종신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평생종신연금 형태로 지불됨

- 가입대상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으로는 401(k)제도, 457제도¹⁰⁰⁾, 403(b)제도¹⁰¹⁾, 키오플랜(Keogh Plan)¹⁰²⁾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¹⁰³⁾

가) 401(k) 제도(Cash or deferred arrangements)

- 401(k) 제도는 독립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이익분배제도, 금전구입제도, 주식상여제도, SIMPLE 등에 결합될 수 있는 선택적인 제도임¹⁰⁴⁾
 - 근로자가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일정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연금 부담금으로 형태로 수령할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현금이 아닌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고 함
 - 적격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401(k)계좌에 납부하는 연금 부담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함
- 특정 경우에 한하여 조기인출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로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100) IRS 457조에 의해 규정된 주·지방 공공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401(k), 403(b)와 달리 과세이연의 혜택이 없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59.5세 이전에 인출하더라도 10%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101) 403(b)제도는 IRS 403(b)에 규정된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병원단체연합회, 자영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기본적인 내용은 401(k)와 유사함

102) 1962년에 도입한 자영업자와 동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도 키오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제도와 동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고,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불입한 연금 부담금은 사업비용으로 처리됨

103) 하나금융연구소(2009), p. 6

104) 1978년 현금수령 혹은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Cash or Deferred Arrangements, CODAs) 이 IRS 401(k) 조항을 추가되면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이름이 붙여짐

경우에는 통상 소득세 이외에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됨

- Roth 401(k)는 2006년 IRC 402(A)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401(k)와 Roth IRA의 특성을 결합한 확정기여형 제도임
 - Roth IRA는 세후 소득을 적립하고 인출 시에 비과세를 적용함
 - 59.5세 이후 연금 급여 수령 시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음

나)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s)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한을 부여하여 퇴직연금으로 신탁기금(Trust Fund)에 적립하도록 허용한 연금제도임
 - 기업 수익규모에 따라 적립금 수준이 결정되므로 사용자는 매년 납입할 의무는 없음
-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함
 - 단, 401(k) 제도를 결합하지 않은 순수(Pure) 이익분배제도의 경우에는 연금 부담금 전액은 사용자만 부담하게 됨

다)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s)

- 주식상여제도는 사용자가 기업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익분배제도와 유사하지만 연금 부담금 적립 시 현금이 아닌 사용자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적립금을 개별 근로자 보수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할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가로 환산한 주식수를 적립함
 - 근로자는 적립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 특정 경우에 한하여 조기 인출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로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며, 인출은 현금 대신 사용자 주식으로 수

령이 가능함

라) 금전구입제도(Money Purchase Plans)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사용자는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신탁기금(Trust Fund)에 적립하는 제도임
 - 매년 고정적인 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됨
 - 조기 인출 및 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은퇴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함

마) 종업원저축제도(Saving and thrift Plan)

- 근로자의 연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 부담금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연금 부담금(matching contribution)을 적립함
 - 종업원저축제도는 급여이체를 통한 편리하고 정기적인 저축이 가능하고, 적립금은 전문적인 투자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음
 - 근로자 개인별 계정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비과세됨
- 다른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와 결합하여 사용됨
 - 금전구입제도 혹은 이익분배제도의 형태로 설계되거나 사용자가 이미 도입하고 있는 다른 연금제도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 근로자가 아닌 개인에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4년 ERISA의 시행과 함께 도입됨
 - 과세이연(Tax deferral)이라는 조세지원 혜택을 통하여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1981년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70.5세까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활용됨¹⁰⁵⁾

□ IRA 유형은 Traditional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가 있음

- SIMPLE IRA, SEP IRA는 사용자 지원이 있는 IRA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분류될 수 있음

□ Traditional IRA는 개인이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대부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세전 저축의 성격을 가지며,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수익은 인출 시 통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됨

□ 1998년 도입된 Roth IRA는 개인에 의한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 일정요건¹⁰⁶⁾을 충족하는 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되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음

□ Traditional IRA, Roth IRA의 적립한도는 연간 5,000달러(50세 이상의 경우에는 6,000달러임)과 개인이 당해 연도에 벌어들일 과세대상 보상(taxable compensation)중 적은 금액임

□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는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됨

- Traditional IRA로부터 Roth IRA로의 전환 또는 적격퇴직연금제도로부터 Roth IRA로 이전(rollover)한 지 5년 이내 조기 인출하는 경우

- 이외에도 적격급여액 요건 미충족 계좌에서 인출한 연금 중 과세대상 금액의 10%가 부과됨

– 적격 급여액(qualified distribution)은 ① Roth IRA 계좌 개설 후 최소 5년 이상

105)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106)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인출 연령 최소 59.5세 이상

불입하고 ② 수급 및 인출이 특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¹⁰⁷⁾

- SIMPLE(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는 1996년에 신설된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로 조세지원 혜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격연금으로 인정됨
 - 401(k)제도나 이익분배제도와 같이 근로자의 세전 급여에서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납입이 허용됨
-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 IRA는 197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사용자가 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대신에 IRA제도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용함

다. 퇴직연금제도 과세제도

- 미국 사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EET(면세-면세-과세) 형태이나, Roth 401(k) 제도의 경우에는 TEE 형태에 따름
- 적격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은 IRC와 ERISA에서 규정하고 있음¹⁰⁸⁾¹⁰⁹⁾
 - 납입 단계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 한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¹¹⁰⁾
 - 납입 단계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됨
 - 단, 401(k) 제도가 결합된 경우에 한함
 - 연금 적립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됨

107) 59.5세 이후 연금액을 수급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수급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산 또는 유산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08) ERISA는 특히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규정함

109) 이상울(2001a), p. 30

110) 연금 수령 시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보장세(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나 연방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 등이 부과되지 않음

○ 손금산입, 소득공제, 운용 시 투자수익 비과세 등을 통하여 누적된 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급여 수령 시에 과세됨

□ 다음 장에서 연금제도별 조세지원을 연금 부담금의 납입 단계, 연금 적립금의 운용 단계, 그리고 연금 급여 수령 단계별로 알아봄

1) 연금 부담금 납입 단계

□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함

□ 근로자 연금 부담금 납입이 허용되는 적격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음

□ IRA제도에 납입하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적격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짐

가) 적격연금제도(qualified retirement plan)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의 출연 한도는 없으나, 연금 급여의 한도가 있음

○ 연속된 3년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기간의 평균 총급여의 100% 또는 20만달러 중 적은 금액임

○ 사용자 부담금은 완전적립금 한도(full funding limitation)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 과세목적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음

– 완전 적립금이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연금 급여액의 현재가치의 100%를 의미하며 보험계리상 방법으로 계상됨

- 손금산입 한도의 초과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exercise tax)이 한도초과 출연금이 소멸할 때까지 부과됨¹¹¹⁾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금전구입제도와 같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서는 매년 연금 부담금 적립 한도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하며, 사용자 부담금의 손금산입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됨¹¹²⁾
 - 연금부담 적립금 한도범위는 근로자 총급여(compensation)의 100%와 5만달러(2013년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개별 근로자별로 계산됨
 - 총급여는 25만 5천달러 이내의 금액임
 - 사용자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할 수 없음
 - 총급여는 25만 5천달러(2013년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액도 포함됨
 -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차기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매년 10%의 징벌적 세금(exercise tax)이 부과됨
 - 401(k)제도와 결합되는 경우,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 사용자가 연금 부담금의 적립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른 근로자의 계정에 분배, 다음 해 사용자 연금 출연금으로 이용, 임시계정에 분류한 후 다음해 모든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음
 - 만일 근로자 연금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됨

111) Code section 4972

112) IRC Sec. 404(a)(3)

나)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

- 근로자는 선택적 이연을 통하여 적격퇴직연금제도에 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¹¹³⁾
 - 이 경우,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적격연금제도에 납입한 사용자 연금 부담금과 같이 처리됨
 - 선택적 이연금액은 납입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 근로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됨

-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 한도액은 총급여의 25%와 17,500달러 (2013년 기준) 중 적은 금액임¹¹⁴⁾
 - 총급여는 25만 5천달러를 한도로 함
 - 17,500달러 한도는 SEP와 401(k) 제도, SIMPLE IRA 제도, Section 403(b)제도의 급여공제제도(Salary reduction arrangement)에 납입한 선택적 이연의 합계액에 적용됨
 -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5,500달러(2013년 기준)의 추가 연금 부담금(Catch-up contribution) 적립을 허용함
 - 추가 연금 부담금은 선택적 이연한도(17,500달러)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액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 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은 추가적으로 출연하여야 함¹¹⁵⁾
 - 선택적 이연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단, 총급여액의 1% 한도) 또는 선택적 이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총급여액의 1~6% 한도)
 - 이외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 여부와 상관없이 총급여의 3%를 한도로 연금 부담금(Nonelective contribution)을 납부하여야 함

113) 선택적 이연은 401(k) plan이외에, The Thrift Savings Plan for federal employees, Salary reductio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ARSEP),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SIMPLE plans), Tax-sheltered annuity plans(403(b)plans), Section 501(c)(18)(D) plans, Section 457 plans에 결합될 수 있음

114)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금 부담금(salary reduction contribution)의 전체 한도임

115) IRS, Publication 560, p. 16

다) 사용자 지원 개인연금제도

- SEP IRA에 납입할 수 있는 총 적립한도액은 총급여의 25% 또는 5만 1천달러중 적은 금액임
 - 총급여는 25만 5천달러(2013년 기준)를 한도로 함

- SEP IRA에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과 총급여의 25% 중 적은 금액임
 - 총급여는 25만 5천달러(2013년 기준)를 한도로 하고, 각 근로자별로는 5만 1천달러를 한도로 함

- SIMPLE IRA에 납입할 수 있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급여공제 연금 부담금(Salary reduction contribution, SAR) 한도는 1만 2천달러(2013년)임
 - 다른 적격연금제도하에서 선택적 이연에 의한 급여공제를 하고 있다면 급여공제 연금 부담금 및 선택적 이연의 배제에 대한 전체(overall) 연간 한도는 17,500달러(2013년 기준)가 됨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500달러를 한도로 추가 연금 부담금(Catch-up contribution)이 허용됨
 - 사용자 부담금 적립 한도와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보조 연금 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 또는 총급여의 2%에 해당하는 비선택적 연금 부담금(non-elective contribution)임
 - 비선택적 연금 부담금의 경우, 해당 사용자로부터 최소 5천달러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에 한함

〈표 Ⅲ-7〉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 · 사용자 손금산입 한도

유형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 (연금 급여 한도)	손금산입 한도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3년 연속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기간 동안의 평균급여 100%와 200,000달러 중 적은 금액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사용자	50,000 달러와 총급여의 100% 중 적은 금액 ^{1), 2)}	총급여 25% + 선택적 이연액
	근로자	선택적 이연한도 - 17,500달러(50세 이상: 23,000달러) ³⁾	
SEP	사용자	51,000달러와 총급여의 25% 중 적은 금액	총급여 25%
	근로자	해당사항 없음	
SIMPLE IRA	사용자	총급여 3%, 총급여 2%	총급여 3%, 총급여 2%
	근로자	12,000달러(50세 이상: 23,000달러)	

주: 1)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금전구입제도 각각 적용됨

2) 총급여는 255,000달러(2013년)에 한함

3) 선택적 이연한도

자료: IRS, Publication 560, p. 3

라) 개인퇴직계좌(IRA)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¹¹⁶⁾

- Traditional IRA에 납부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됨
 -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한 연금 부담금, 5,0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임)와 과세대상 보상(taxable compensation)중 적은 금액임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퇴직연금제도(employer retirement plan)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득¹¹⁷⁾ 및 신고지위(filing status)에 따라 개인연금제도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짐

116) IRS, Publication 17(2013), pp. 120~122

117) 소득은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의미함. 총소득(gross income)에서 항목별 공제 후 산출된 AGI에 비과세 이자소득, 사회보장 급여 등을 가감함.

〈표 Ⅲ-8〉 Traditional IRA 연금 부담금의 수정 조정총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신고지위		수정 조정 총소득 ¹⁾	소득공제 여부
퇴직 연금 제도 가입시	독신자, 세대주 신고	59,000달러 이하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59,000달러 초과~ 69,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69,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기혼(조인트), 적격 미망인 ²⁾	95,000달러 미만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92,000달러 이상~ 115,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115,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기혼 (개별신고)	10,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10,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퇴직 연금 제도 미가입시	독신자, 세대주 신고	소득제한 없음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기혼(조인트), 적격 미망인 ³⁾	소득제한 없음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기혼(조인트), 적격 미망인 ²⁾	173,000달러 미만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173,000달러 이상~ 183,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183,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기혼(별도신고) (married filings separately)	10,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가능함
10,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주: 1)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odified AGI)

2) 배우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함

3) 배우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미가입함

자료: IRS, Publication 17의 Table 17-1, Table 17-2.를 재조정함

마) 한도 초과 연금 부담금 납입(Excess Contribution)

- 사용자가 연금 부담금 적립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른 근로자의 계정에 분배, 다음 해 사용자 연금 출연금으로 이용하고, 임시계정에 분류한 후 다음 해 모든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음

- 적립한도를 초과한 선택적 이월액과 다른 적격연금제도하에서 납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교정적 배분액(corrective distribution)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됨

2) 운용단계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완전적립금 범위 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됨

3) 퇴직급여 수령단계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됨
 - 특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에 대하여 10년 연분연승법(10-year tax option)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특정 연금 급여에 대한 20%의 자본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benefits) 관련 과세규정은 지급 형태와 지급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annuity) 형태이고,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경우는 일시금(lump-sum) 형태임

가) 연금(annuity) 수령 시

(1) 연금과세 규정(Annuity Rule)

- 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annuity) 과세방법은 Code Sec. 72에 의한 연금과세 규정에 의함

- 연금과세 규정에서는 연금 급여 중에서 납입 단계 당시 근로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연금 부담금 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¹¹⁸⁾
 - 연금(annuity)은 연금개시일(annuity starting date)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그 지급액의 금액이 정해져야 함¹¹⁹⁾
- 납입 단계에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순투자액 상당액인 원금(cost)으로 보고 과세대상 금액 계산 시 연금 급여에서 차감함
- 예를 들어, 근로자 연금 부담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금액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적립금 상당액을 공제한 부분을 과세소득에 포함함¹²⁰⁾
- 수령하는 연금 급여 중 순투자 금액인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제외비율(exclusion ratio)을 이용함
-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tax free part)을 구하고 이를 연금 급여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taxable part)을 구함
 - 과세제외비율은 예상수익(Expected Return under the contract) 대비 투자금액(investment in the contract)으로 정의됨
 - 예상수익은 연금 계약상 수령하기로 한 예상기간 동안의 총연금수령액이고, 투자금액은 세후 연금 부담금 적립금인 원금(cost)을 의미함
 - 이를 일반법(general method)이라고 함
 - 과세대상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함

118) 이상율(2001b), p. 71

119) 확정기간부 연금(Fixed-period annuities)과 사망시점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annuities for a single life)이 포함됨

120) 만일 사용자 부담금 중 납입 단계 시 과세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역시 원금으로 봄

(2) 간편법(Simplified Method)

- 1996년 11월 19일 이후 개시되는 연금은 적격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 ① 75세 미만이거나 ② 최소 5년 미만의 급여 지급을 보증(guaranteed payment)하는 경우에는 간편법을 적용하여야 함
 - 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편법에 의하여 원금을 계산하고 비적격연금제도인 경우에는 일반법에 의함
 - 적격연금제도의 연금이 1986년 7월 1일 이후 그리고 1996년 11월 19일 이전에 개시하는 경우에는 간편법과 일반법을 모두 선택할 수 있음
 - 연금개시일이 1986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금이 3년 규정(Three-Year Rule, 현재는 폐지됨)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법을 적용해야 함
 - 1986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금을 위하여 3년 규정을 사용한다면 수령하는 연금은 전액 과세대상임
 - 단, 근로자가 75세 이상으로 최소 5년 이상 급여지급을 보장하는 적격연금제도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급여는 일반법을 적용함

- 간편법은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여 연금액에서 차감함¹²¹⁾
 - 과세제외금액은 ① 투자금액(investment in the contract)에서 ② 예상연금수령 횟수(expected number of annuity payment)로 나눈 금액임
 - ① 투자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으로서 근로자의 순투자액 상당액인 원금(cost)임
 - ② 예상연금수령횟수는 연금 가입자의 나이에 기초하여 산출됨(〈표 Ⅲ-9〉 예상연금 지급 횟수 참조)
 - 예를 들어, A씨가 1998년 2월에 65세의 나이로 은퇴하고 퇴직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경우, 예상연금수령 횟수는 260회임
 - 68세인 B씨와 60세인 부인이 2000년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공동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부의 나이의 합은 128세이므로 예상연금수령 횟수는 310회임

121) IRC Code Sec. 72(d), 72(e)(2)

-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차감하면 과세소득이 됨

〈표 Ⅲ-9〉 예상연금지급 횟수

(단위: 회)

종신연금 (독신자)			공동 종신연금	
연금개시일 현재 나이	연금수령 횟수		연금개시일 현재 나이	연금수령 횟수
	1996년 11월 18일 이전	1996년 11월 19일 이후		
55세 이하	300	360	110세 이하	410
56~60세	260	310	111~120세	360
61~65세	240	260	121~130세	310
66~70세	170	210	131~140세	260
71세 이상	120	160	141세 이상	210

자료: IRS, Publication 575 (2013), Code Sec. 72(d)(1)(B)(iii), 72(d)(1)(B)(iv)

나) 비정기적인 급여 형태로 수령시

- 비정기적인 급여란 연금과 같은 정기급여 이외의 형태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의미함
 - 1932년 2월 이전 출생자가 수령하는 일시금, 1932년 2월 이후 출생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일시금, 현금인출액, 운용 시 발생하는 투자수익(배당금), 특정 대출금 등이 포함됨

(1) 1932년 2월 이전 출생자가 수령하는 일시금¹²²⁾

- 1932년 2월 이전 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 요건의 일시금의 경우 선택적 과세 방법(optional methods)을 적용할 수 있음¹²³⁾
 - 적격퇴직연금제도로부터 수령하는 일시금(lump-sum distribution)으로 한 종류로 설정된 적격퇴직연금제도 내 근로자 계좌의 모든 금액이 한 과세기간에 지급되어

122) IRS, Publication 575(2013)

123) 1932년 2월 이후 출생자가 수령하는 일시금에 대하여 과거 5년 기준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었으나 2001년에 폐지됨

야 함

– 59.5세 이후, 근로자의 사망, 장애, 이직을 원인으로 지급됨

- 선택적 과세방법에는 10년 기준 연분연승법(10-year tax option) 또는 자본소득세제 (capital gain tax treatment)가 있음

- 10년 기준 연분연승법은 소득의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한 과세방법임
 - 10년 기준 연분연승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되어 과세됨
 - 과세소득을 10으로 나누고, 특정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 다시 1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임
 - 과세소득은 일시금에서 최소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시금이 7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시금 전액을 과세함¹²⁴⁾
 - 특정세율은 1986년 소득세율(독신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평균세율임

- 자본소득세제는 1974년 이전에 가입한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일시금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과세소득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함

- 비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일시금은 선택적 과세방법이 적용되지 않음¹²⁵⁾

(2) 1932년 2월 이후 출생자가 수령하는 비정기적 급여¹²⁶⁾

- 비정기적인 급여에는 1932년 2월 이후 출생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일시금, 현금인출액,

124) Form 4972, Tax on Lump-Sum Distributions, Part III. Complete this part to choose the 10-year tax option

125) SEP, IRA, section 403(b)에 의한 연금제도,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section 457 규정에 의한 연금 제도가 있음

126) IRS, Publication 575(2013)

운용 시 발생하는 투자수익, 특정 대출금 등이 포함됨

- 비정기적인 급여 관련 과세제도는 수령 시점, 적격연금제도 여부, 특정 지급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연금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수령 시점 여부
 - 연금개시일 이전 수령 시에는 적격연금제도 여부
 - 연금개시일 이전 수령하고 비적격연금제도인 경우에는 특정 생명보험, 저축성보험, 1982년 8월 14일 이전에 납부한 연금 부담금 적립금 여부

- 연금개시일 이후 수령한 비정기적인 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은 통상적으로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됨
 - 그러나 계약의 해지 등의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금(cost)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총소득에 포함함

- 연금개시일 이전 수령 시, 적격연금제도에서 비정기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과세제외금액(tax free part)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함¹²⁷⁾
 - 먼저 원금(cost)에 해당하는 부분인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한 다음 과세대상 금액을 구함
 - 과세제외금액은 비정기적 급여 수령액에서 연금계정 잔고(Account balance)에서 연금 부담금 적립금인 원금(cost)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text{과세제외금액} = \text{비정기 급여 총수령액} \times \frac{\text{원금}}{\text{연금계정 잔고}}$$

- 연금개시일 이전 비적격연금제도에서 비정기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지급액 중에서 과세대상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과세제외금액을 구함
 - 과세대상 금액은 ① 비정기적 급여와 ② 비정기적 급여 수령 직전의 순투자금액을

127) 여기서 적격연금제도는, 적격퇴직연금(qualified employee plan) 적격근로자 개인연금(qualified employee annuity plan), 403(b)제도임

초과하는 적립금의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임

- 연금 개시일 이전 비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특정 비정기적 급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총소득에 포함함¹²⁸⁾

다) 사용자 유가증권(employer securities)으로 수령하는 경우¹²⁹⁾

- 사용자(법인)가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미실현평가이익(Net unrealized appreciation, NU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주식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으로 과세이연할 수 있음¹³⁰⁾
 - 은퇴 시 연금 급여 수령 시가 아닌 주식 매각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
- 일시금으로 사용자 발행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증가된 부분(수령 시 주식 시가-주식의 장부가액)은 NUA으로 근로자가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됨
 -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수령시 NUA를 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음
- 연금으로 사용자 발행 주식을 받는 경우 NUA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 연금 부담금 적립금에 해당하는 미실현평가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음
- 주식 매각 시 장기 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은 사용자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NUA의 금액을 한도로 함
 - NUA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로 구분됨¹³¹⁾

128) 계약해지로 인한 지급금, 생명보험이나 저축성 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특정 지급금, 1982년 8월 14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지급금 등이 있음

129) IRS, Publication 575(2013)

130) 유가증권에는 주식(employer corporation's stock), 회사채(bond), 채무증서(registered debentures) 등이 있음

131) 2013년 단기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10~39.6%가 적용되고, 장기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0~20%가

- 근로자가 수령하는 사용자 유가증권의 취득가액(tax basis)은 아래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임
 - 근로자 연금 부담금중 유가증권에 귀속되는 부분
 - 유가증권이 지급된 연도에 통상소득으로 과세된 사용자 부담금
 - 사용자 부담금으로 유가증권이 지급된 연도에 통상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귀속되는 NUA

라) IRA 계좌 이전(Rollover)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내에 다른 적격연금이나 IRA 계좌로 이전(rollover) 또는 이체(transfer)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급여액은 수령한 연도가 아닌 미래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¹³²⁾
- 이전이 허용되는 금액(eligible rollover distribution)은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모든 지급금임
 - 단, 종신 또는 10년 이상의 예상생애주기(life expectancy)에 걸쳐 매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70.5세에 도달하여 최소 연금 급여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수령하거나, 401(k) 제도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초과금을 돌려받는 경우 등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음
- 금융기관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0%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단, 직접 이체하는 경우(Direct rollover option)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됨
 - 60일 이내 다른 적격연금제도나 IRA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적용됨

132) 이전은 일단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인출금을 수령한 후 다른 연금에 불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체는 인출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다른 적격연금제도로 바로 옮기는 것을 의미함. 본문에서는 이체와 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이전(rollover)이라고 함

마) 징벌적 세금(exercise tax)

- 조기 인출(early distributions), 과다 적립금(excess accumulation) 또는 최소 연금 급여(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벌적인 세금(exercise tax)이 부과됨

-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연금 급여에는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고, SIMPLE IRA의 경우에는 25%가 적용됨
 - 과세 제외부분(tax free part)를 차감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됨
 - 조기 인출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음
 - ①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종신연금 형태로 이루어지는 급여, 근로자의 장애·사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연금 급여, 55세 이후 은퇴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위한 급여
 - ② IRA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새로운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이체(direct rollover option)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적격연금제도나 IRA 등에 이전(rollover)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영구장애 및 전신장애 상태인 경우, 대학교 교육비 납부, 주택 구입, 조정총소득의 7%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위한 급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기 인출로 보지 않음
 - Roth IRA에는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인출하는 급여(단,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됨)는 조기 인출로 보지 않음

- 70.5세에 도달한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연금 급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최소 연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70.5세 이후 지급하는 연금 급여가 최소 연금 급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 부족액에 대하여 5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됨¹³³⁾

133) IRS, Publication 575(2013)

라.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1) 해외파견 근로자 및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

가) 해외 파견 근로자

-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파견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 부담금은 해외 자회사 및 국내 자회사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함¹³⁴⁾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근로자는 사용주의 해외 지점, 해외 자회사, 또는 국내 자회사들의 해외 지점으로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¹³⁵⁾
 - 해외 자회사들이나 국내자회사의 해외 지점은 IRS와 ERISA에 의한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에 연금 부담금을 납입함
 -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는 미국원천소득 범위 내에서 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됨
- 미국은 파견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하여 사용자 부담금의 조세지원 효과를 유지하고 있음¹³⁶⁾
 - 예를 들어, 미국·프랑스 조세조약(2004)에서는 미국 적격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투자수익은 프랑스 세무목적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과세하지 않음¹³⁷⁾
 - 단, 프랑스 적격연금제도에서 허용되는 조세지원 범위 내 금액에 한함

134) Code section 306, Code section 407

135) 파견 근로자에 의한 파견국 내의 고정사업장 문제는 고려하지 않음

136) 상세내용은 '3) 조세조약에 의한 국외 퇴직연금제도 조세지원'에서 후술함

137) 소득과 자본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미국과 프랑스 조세조약 개정 의정서 제18조의 문단 2

나)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 모국 사용자 부담금은 미국 세무목적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외 파견과 유사하게 조세조약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경감할 수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용자 부담금은 세무목적상 손금산입이 가능함

2) 국내 및 국외 이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

가)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국외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함¹³⁸⁾
 -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국가에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를 주장하거나, 미국 세무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¹³⁹⁾

나) 비거주자가 국내로부터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¹⁴⁰⁾

-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미국에 소득원천이 있는 적격연금제도의 연금 급여(distribution)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임
 - 연금 급여의 소득원천은 사용자 부담금의 보상요소(compensation element)와 투자수익의 소득요소(earning element)에 의해 결정됨
 - 연금 지급액 중 보상요소로 구성된 부분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 동일한 소득원천을 가지게 됨¹⁴¹⁾¹⁴²⁾

138) IRS, The Taxation of Foreign Pension and Annuity Distributions, International Tax Gap Series, 2008

139) IRS, Publication 514

140) IRS, Publication 525, IRS, Publication 515

141) 단,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적립금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에 의해 소득원천을 구분함

– 연금 지급액 중 소득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금신탁(trust)이 설립된 장소에 의해서 소득원천을 결정함

- 외국인 관련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는 지급금의 소득원천, 성격, 수령인의 세무상 지위, 지급이 발생하는 장소, 계좌가 설정된 장소에 따라 달라짐
- 정기적인 형태의 연금 급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표에 의하여, 비정기적인 형태의 연금 급여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함
 -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연금 급여의 과세대상 부분에 대하여 30% 세율이 적용됨¹⁴³⁾¹⁴⁴⁾
- 그러나, 비거주자 외국인은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 대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면제 적용을 위하여 원천징수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 단, 적격퇴직연금제도에 한함

3) 조세조약에 의한 국외 퇴직연금제도 조세지원

- 미국은 1996년 이후 조세조약 체결 시 연금소득의 과세권 배분 이외 연금 부담금 관련 특례규정을 반영함
-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연금소득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임
 - 단,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는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이 있음

142) 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근로에 귀속되는 부분은 미국원천소득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근로에 귀속되는 부분은 국외원천소득으로 결정됨

143) Section 1441

144) 1986년 12월 31일 이후 미국내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연금 급여인 경우에는 누진세율(graduated rates)이 적용될 수 있음

〈표 Ⅲ-10〉 조세조약 연금소득(pension distribution) 원천지국 과세규정

(단위: %)

국가	제한세율	국가	제한세율
캐나다	15	인도네시아	15
덴마크	30 ¹⁾	폴란드	30
프랑스	30	남아프리카	15
필리핀	30	-	-

주: 1) 2000년 3월 1일이전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임
 자료: IRS, Publication 901(2013)

- 연금 부담금 특례 규정은 납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모국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파견국 세무신고 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이연의 효과는 상실되고 이중과세가 발생함
 - 모국 적격연금제도에 납부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파견국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상실됨
 - 조세조약상 조세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연금제도 조세지원 효과는 상실됨

- 외국 연금제도에 납부한 특정 연금 부담금은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연금 부담금에 대한 미국 세무처리에 상응한 조세지원이 허용됨
 - 미국 시민권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설정된 연금제도에 미국 시민권자 본인 또는 국외 사용자에게 의한 연금 부담금이어야 함
 - 외국 연금제도에 납부한 연금 부담금 대한 미국 세무상 조세지원 한도는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됨
 - ① 거주지국에 설정된 연금제도의 연금 부담금과 급여 관련 거주지국의 조세지원액
 - ② 이에 상응하는 미국 적격연금제도의 연금 부담금 관련 조세지원액

-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연금 부담금 특례규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미국·캐나다 조세조약 의정서(2007)에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한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제도 지원규정 및 국경 간 통근자,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이 포함됨¹⁴⁵⁾
 - 국경 간 통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 설정된 연금제도 또는 근로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에 대해 논의함
 - 미국·영국 조세조약(2001)은 영국에 거주하면서 영국 연금제도에 가입한 미국 시민권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음
 - 미국·영국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근로자는 미국 세무신고 목적으로 미국 납부세액 계산 시 영국내 연금제도에 납부한 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음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조약 연금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적격 퇴직연금제도를 과세당국에서 결정해야 함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조약 연금 부담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제도는 각 국가의 세무목적상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상응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함
- 즉, 외국 연금제도가 미국 세무목적상으로 인정된 연금제도에 상응한다는 것을 관할 과세당국이 동의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조세조약상 반영됨
 - 이 적용 요건으로 인하여 IRS는 연금 부담금 관련 규정 이행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함
 -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연금 부담금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은 본인이 가입한 외국연금제도가 미국 연금제도에 상응하는 연금제도에 해당한다는 IRS의 결정이 필요했고, 이러한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145) 상세내용은 캐나다 편에서 후술함

- 그 결과, 실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미국 과세관청은 세무목적상 인정되는 개별 국가의 연금제도 유형을 열거하는 약정(agreement)을 체결하거나, 조세조약 의정서(Protocol) 또는 제안각서(Exchange of Notes)에 열거함
- 미국·독일 조세조약 의정서(1989), 미국·영국 조세조약 제안각서(2001), 미국·캐나다 조세조약 의정서(2007)에서는 적격연금제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표 Ⅲ-11〉 조세조약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 부담금 규정

국가	발효일	조세지원	적격연금제도
프랑스	2007년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 의정서에 예시함 · 프랑스 관련법령(French social security legislation)에 의한 프랑스 연금제도를 포함한 퇴직연금제도임 · 미국 401(a) 규정에 의한 적격연금제도, IRA, 408(p), 403(a) 규정에 의한 적격연금제도, Roth IRAs
독일	2008년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해당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적격연금제도
스위스	1998년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해당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적격연금제도로 미국 Keough plan, IRA 예시됨
네덜란드	2005년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상 적격연금제도 규정을 위한 별도의 약정 체결함 ¹⁾
영국	2004년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 제안각서에 열거됨 · 영국 관련 법령(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of 1988)에 의해 조세지원을 받는 연금제도 · 미국의 경우 401 (K) 연금제도, IRA, SEP, Roth IRA, IRC §403 (a)와 (b)규정에 의한 연금제도
캐나다	2009년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 의정서에 열거됨 · 캐나다의 경우, RPP, RRSP, RSP, RRIF 포함됨 · 미국의 경우, 적격연금제도, 401(k) 연금제도, IRA, IRP, 간이퇴직제도계좌, 403(b)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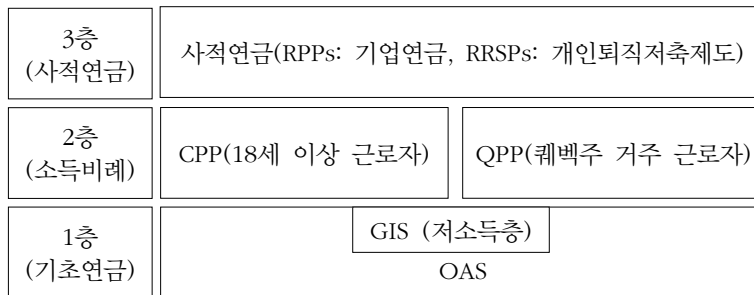
주: 1) Notice 2000-57, 2000-2 C.B 389, 2000-43 I.R.B. 389.
자료: IRS, Publication 901(2013), 조세조약 의정서

3. 캐나다

가. 연금제도 체계

- 캐나다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으로 분류됨¹⁴⁶⁾
- 1층은 비기여·보편성에 입각한 기초연금인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OAS) 및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가 있음
 - 2층은 기여·소득비례에 따른 공적연금인 캐나다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와 퀘벡연금제도(Quebec Pension Plan, QPP)임
 - 3층은 사적연금으로 기업연금(Occupation pension)과 개인연금인 개인퇴직저축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로 구성됨

[그림 Ⅲ-3] 캐나다의 연금체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캐나다의 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

가) 노령보장연금(OAS)과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IS)

- 1952년 노령보장연금법(Old Age Security Act)이 입법되어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으로 운영되는 OAS을 시행함

146) 김연명 외(2012), p. 63

- 1927년부터 시행되었던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를 대체함
- 1967년 OAS 수급자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인 GIS가 도입됨

- OAS는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한 65세 이상의 캐나다 국민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40년 이상 거주자에게 완전 급여를 지급하며 거주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함

- 가입요건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연간 기본면제액(Year's Basic Exemption, YBE) 이상인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임
 - 1996년 이후 YBE는 3,500캐나다달러임
 - 캐나다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며, 캐나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출국 당시 캐나다 국민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이어야 함

-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OSA는 1989년 고소득자 급여환수(clawback) 제도를 도입함¹⁴⁷⁾
 - OAS 수급자 중 연간 순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 1캐나다달러당 15센트의 비율로 급여를 반납하여야 하며 1996년 이후에는 정부가 반납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2012년 현재 연간소득이 69,562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캐나다달러당 15센트의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게 되고 소득이 112,772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OAS 급여액이 없음

- OAS 수급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GIS가 추가적으로 지급됨
 - 1966년 CPP 도입 시 10년을 한시로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됨
 - CPP 도입 시 완전급여를 수령받기 위하여 10년이 걸렸고, GIS는 그때까지 일정

147) 홍원구(2012), p. 9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OAS연금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소득의 월 2캐나다달러당 연금 급여는 1캐나다달러씩 감소하고, 2012년 1월 현재 소득이 16,368캐나다달러에 이르면 지급이 중단됨

- OAS 연금 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고, GIS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캐나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연금 급여 지급 시 25%로 원천징수함

나) 캐나다연금제도(CPP)

- CCP는 196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소득이 있는 캐나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강제 적용됨
 - CCP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모든 캐나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임
 - 퀘벡주는 독자적인 소득비례연금체계인 QPP를 운영함¹⁴⁸⁾
- OAS는 연방수입인 일반조세로 조달하는 반면, CPP는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부담금)로 충당함¹⁴⁹⁾
 - 부담금은 연간 최대 기여대상소득(Yearly Maximum Contribution Earnings)에서 소득 하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9.9%임¹⁵⁰⁾¹⁵¹⁾
 - 요율은 1966년 3.6%에서 시작되어 2003년 이후 9.9%를 유지하고 있음
 - 연간 소득 하한금액(year's basic exemption)인 3,500캐나다달러 이하는 면제되며, 상한금액은 51,100캐나다달러임¹⁵²⁾
 - 근로자의 부담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4.95%씩 부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

148) QPP는 부담금이나 급여수준이 CCP와 동일함

149) 조영훈(2011), p. 50

150) 연금대상 최고소득(Yearly Maximum Pensionable Earning)에서 기초공제액(Year's Basic Exemption)을 차감하여 결정됨. 기초공제액은 연금대상 최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가 1998년부터 연 3,500캐나다달러임

151) 홍원구(2012), p. 13

152) 이 경우 최대 부담금 납입액은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의 차이값의 9.9%인 4,712.4캐나다달러임

우는 본인이 전부 부담함

2) 사적연금제도

-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연금 급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¹⁵³⁾
- 정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적연금은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투자수익 비과세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적연금에는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제도(RPP)와 개인연금인 개인퇴직저축제도(RRSP), 퇴직소득적립펀드(RRIF) 등이 있음
- 개인연금제도인 RRSP, RRIF는 은퇴 이후 퇴직연금제도 내 적립된 연금자산이 일시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함¹⁵⁴⁾

나.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Registered Pension Plans, RPPs)

- RPP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과 지방정부 규제기관(provincial regulator)의 인가(registration)을 받아야 함
 -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적립한도, 소득공제 한도 등 조세지원 규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함
 - 연금 급여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부터 지급되고, 조기 인출은 예외적인 사항에 한

153) 오병국(2011), p. 12

154) RRSP, RRIF는 사용자 지원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나. 퇴직연금제도' 편에서 후술함

해 55세 초과부터 허용됨

- 급여 지불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으로 구분됨¹⁵⁵⁾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급여는 근무연수, 소득수준 등에 의해 증가하며 사전에 정해진 연금 급여액에 의해 결정됨
-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는 금전 구입(Money Purchase)퇴직연금제도가 대표적임
 - 매년 일정비율의 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계정에 적립하나 연금 급여의 한도는 정해지지 않음
 - RPP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 급여 수령 자격이 생기며, 은퇴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 부담금 적립금은 고정형 개인연금(Locked-in RRSP), 고정형 퇴직소득펀드(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s, LRIF)로 이체되거나, 새로운 직장의 RPP로 이체할 수 있음¹⁵⁶⁾
 - 근로자 연금 부담금(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의 납입이 허용됨

2) 이연이익분배제도(Deferred Profit Sharing Plan, DPSP)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이익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한 연금제도임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RPP와 달리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함

155) RPP를 사용자 퇴직연금제도(Employer Pension Plan)라고도 함

156) LRIF는 RPP 가입자가 사망, 이혼 등을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하는 경우 적립된 자산을 이전하는 제도로 과세이연은 유지되나 추가 적립은 허용되지 않음

3) 단체 RRSP

- 단체 RRSP(Group RRSP)는 개인연금제도인 RRSP의 한 유형으로 사용자가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플랜으로 가입하고, 근로자 개인별 계좌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적립금액과 투자방법을 결정함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와 유사함

4) 개인연금제도¹⁵⁷⁾

가) 개인퇴직저축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RRSP)]

- 퇴직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한 자산의 축적을 장려하고자 1957년에 도입됨
- RRSP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①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허용을 통한 과세이연, ②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비과세, ③ 연금 급여 수령 시 낮은 수준의 세율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계좌 소유자에 따라 배우자 RRSP와 단체 RRSP(Group RRSP)도 가능함
 - 배우자 RRSP는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에 근로자가 적립 한도 내로 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가 허용됨
 - 연금소득 분할과세 규정(Pension Income Splitting Rule)에 의해, 은퇴 이후 근로자와 배우자가 적립금을 나누어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 인출분은 배우자에게 과세되어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¹⁵⁸⁾
- RRSP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contribution limit)는 직전연도 소득(earned income)의 18%(최대 23,820캐나다달러)임

157) RRSP, RRIF는 캐나다 사적연금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문에 포함함

158) 연금소득 분할과세 규정은 '다. 퇴직연금 과세제도'에서 후술함

- 직전연도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으로 구성되며, 이자·배당·자본소득은 제외됨
 - 미사용 RRSP 적립한도는 미래연도로 이월이 가능함
- RPP, DPSP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경우에는 RRSP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연금조정액(Pension Adjustment, PA)을 추가로 차감함
 - PA는 사용자 지원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금 급여의 가치를 의미하며 RRSP 적립한도 계산 시 반영됨¹⁵⁹⁾
 - CRA는 근로자에게 매년 RRSP 적립한도를 통보함
- 적립한도 초과 연금 부담금의 경우에는 초과납입 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월별 1%의 가산세가 부과됨
- 적립한도 초과액이 2,000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severance or retiring allowance)을 RRSP 계정으로 직접 이체(directly transfer)하는 경우, 일정 한도의 이체금액은 과세이연됨
- 1996년 이전 개시한 근로와 관련하여 근속연수당 2,000캐나다달러, 1989년 이전 개시한 근로의 경우 근속연수당 3,500캐나다달러를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 71세 이전의 조기 인출은 주택 구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함
- 주택구입제도(Home Buyer's plan)는 주택구입시 25,000캐나다달러까지 인출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15년 이내 상환하여야 함
 - 생애학습제도 (Lifelong Learning Plan)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기 위해 연간 1만 캐나다달러씩 최대 2만캐나다달러까지 인출 가능하며, 최초 인출 이후 5년 경과일로

159) '다. 퇴직연금 과세제도' 편에서 후술함

- 부터 60일 이내 또는 마지막 등록 후 두 번째 해 중 이른 시기에 상환을 하여야 함
- RRSP 적립금은 근로자 본인(또는 배우자)의 첫 주택 구입 시 대출의 형식으로 세금 부담 없이 최대 2만캐나다달러까지 사용가능함
- 65세 이후에는 RRSP 계좌에 적립된 연금자산을 RRIF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계약에 가입할 수 있음
 -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술하는 RRIF 계좌로 이체하거나 정기적인 연금(annuity)를 수령받기 위한 연금계약(annuity)에 가입하여야 함
 - 정기적인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됨
 - 일정요건 충족시 최대 2,000캐나다달러 한도로 연금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함
 - 71세가 되는 과세연도 말까지 RRSP 계좌에 적립된 연금 자산은 인출해야 함
 - 나) 퇴직소득적립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 1978년 도입된 RRIF는 퇴직 이전에 적립하였던 자산을 펀드로 운용하면서 일정한 주기로 펀드자산에서 자금을 지급함
 - RRSP와 같이 부담금 납부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됨
 - RRIF에 적립된 자산은 부분인출이 가능하여 RRSP의 전액인출 때보다 세금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사전에 설정된 비율에 따른 최소 인출액이 매년 가입자의 생활비 계좌로 이체됨
 - 최소 인출비율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짐
 - 1992년 이후 설정된 RRIF의 경우 71세 이전은 $1 \div (90 - \text{나이})$ 이며, 71세부터는 최소 인출비율이 확정되어 있음
 - 예를 들면, 70세인 경우 최소 인출비율은 $0.05 (= 1 \div (90 - 70))$ 이며 계좌 잔액의 5%를 인출할 수 있음
 - 71세인 가입자의 최소 인출비율은 0.0738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며, 94세

이후에는 0.2임

- RRIF 계좌에서 인출되는 최소 인출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며,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다) 비과세 저축예금(Tax-Free Saving Account: TFSA)

- TFSA는 2009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18세 이상 모든 캐나다인에게 허용됨
 - 세후(after-tax) 소득을 저축하는 제도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원 혜택은 없음
 - 그러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함
 - 수령단계의 인출금은 과세되지 않음
 - 매년 5,500캐나다달러(2013년 기준)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미사용 적립 한도액은 이연시킬 수 있음
 - 은퇴 이후 TFSA 인출금은 비과세되므로 보충적 소득보장 연금(GIS) 등 소득심사 대상이 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음
 - RRSP 인출금은 기초노령연금(OAS)와 GIS 소득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기피함
- 단체 RRSP와 같이 사용자 보조 퇴직연금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근로자 본인 모두 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다. 퇴직연금제도 과세제도

- 캐나다 사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EET(면세-면세-과세) 형태이나, 개인연금인 TFSA의 경우는 TEE (과세-면세-면세) 형태를 따름
- 적격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은 CRA에서 규정하고 있음

- 납입단계의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 한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¹⁶⁰⁾
 - 납입단계의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됨
 - 연금 적립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됨
 - 손금산입, 소득공제, 운용 시 투자수익 비과세 등을 통하여 누적된 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급여 수령 시에 통상소득(normal income)으로 과세됨
- 다음 장에서 연금제도별 조세지원을 연금 부담금의 납입 단계, 연금 적립금의 운용 단계, 그리고 연금 급여 수령 단계별로 알아봄

1) 연금보험료 납입 단계

-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적립한도(contribution)는 근무연수에 따라 증가하며 보험수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된 연금 급여액임
 -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 근속연수당 2,696.67캐나다달러(2013년 기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적립 및 손금산입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earnings)의 18%와 연간한도(annual limit) 24,270캐나다달러(2013년 기준) 중 적은 금액임
- DPSP의 사용자 부담금 적립 및 손금산입 한도는 당해 연도 소득의(earnings)의 18%와 연간한도 12,135캐나다달러(2013년 기준) 중 적은 금액임

160) 단체 RRSP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나, 소득공제가 허용되어 세무상 효과는 동일함

〈표 Ⅲ-12〉 사용자 부담금 적립 및 손금산입 한도

(단위: 캐나다달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PSP
근속연수당 2,696.67	Min(연소득 18%, 24,270)	Min(연소득 18%, 12,135)

자료 : <http://www.taxtips.ca/rrsp/rrspcontributionlimits.htm>

- PA는 근로자가 가입한 사용자 지원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가치(pension credit)를 의미함
- 개인연금제도인 RRSP는 PA 산정 시 고려되지 않으며, 다음해 근로자의 RRSP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에 반영됨
 - 일반적으로 RPP, DPSP를 운용하는 사용자는 PA 신고의무가 있음
 - 특정 외국 연금제도 연금 부담금이 있는 경우, PA에 반영됨
 - 개인(individual)이 외국인 사용자를 위하여 캐나다 내에서 제공한 근로 또는 캐나다 사용자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로 인하여 외국 연금제도(foreign pension plan)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가 있는 경우
- 근로자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는 사용자 지원 퇴직연금제도인 RRP, DPSP와 개인연금제도인 RRSP에 적용되는 통합적 적립한도(overall contribution limit)임
- 소득공제 가능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 적립 한도는 직전연도 소득(prior year earned income)의 18%와 연간한도 23,820캐나다달러(2013년 기준) 중 적은 금액에서 PA를 차감하여 산출함

〈표 Ⅲ-13〉 연금 부담금 연간 한도(2009~2013)

(단위: 캐나다달러)

연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PSP	RRSP
2009	2,444.44	22,000	11,000	21,000
2010	2,494.44	22,450	11,225	22,000
2011	2,552.22	22,970	11,485	22,450
2012	2,646.67	23,820	11,910	22,970
2013	2,696.67	24,270	12,135	23,820

자료: <http://www.taxtips.ca/rrsp/rrspcontributionlimits.htm>

2) 운용 단계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완전적립금 범위 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됨

3) 퇴직급여 수령 단계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됨

가)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 분할과세 규정(Pension Income Splitting Rule)
 - 2007년 이후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적격 연금소득(eligible pension income)을 최대 50%까지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분할 신고 시 낮은 수준의 세율 적용과 연금소득 세액공제 사용을 통하여 한계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음
- 연금소득은 통상소득(normal)에 포함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됨
-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 적격 연금소득 수령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15%의 연금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¹⁶¹⁾
 -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적격 연금소득과 2,000캐나다달러 중 적은 금액임
 -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환급되거나 이월되지 않음

161) 연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임

- 적격 연금소득은 수령인의 연령 및 연금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수령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격 연금소득은 RPP 연금 급여, DPSP 연금 급여, RRIF 인출금, RRSP에서 지급하는 종신연금 등을 의미함
 - 65세 미만인 경우, RPP 연금 급여와 배우자 사망 이후 수령하는 특정 지출금임
 - 공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 RRSP에서 수령하는 일시금 등은 적격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나) 연금 외 수령시

- 일시금(lump sum)으로 수령 시 RPP, DPSP, RRSP에서 수령하는 일시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고 5~15%의 세율이 적용됨
 - 그러나, RPP, DPSP, RRSP 계좌의 적립금을 RRIF나 다른 연금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RRIF 계좌의 최소 인출액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표 Ⅲ-14〉 일시금 원천징수세율(2012)

(단위: 캐나다달러)

금액 범위	원천징수세율 ¹⁾
5,000 미만	10%
5,000 이상~15,000 미만	20%
15,000 이상	30%

주: 1) 퀘백주 경우, 5%, 10%, 1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됨
 자료: <http://www.cra-arc.gc.ca/tx/rgstrd/rrsprif-reerferr/wthhldng-eng.html#withholding>

-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됨

〈표 Ⅲ-15〉 구간별 연방소득세율

(단위: 캐나다달러)

금액 범위	연방소득세율
43,651 이하	15%
43,652 이상~87,123 미만	22%
87,124 이상~135,054 미만	26%
135,055 이상	29%

자료: <http://www.kpmg.com/Ca/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PersonalTaxRate>

라.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¹⁶²⁾

1) 해외파견 근로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

□ 캐나다 세무목적상 외국 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RCA)나 종업원복지제도(Employment benefit plan, EBP)로 분류될 수 있음¹⁶³⁾

- RCA, EBP는 적격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지 않음
- RCA는 근로자 퇴직, 해고, 근로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RCA선택에 자금을 예치하는 제도로서 사용자 부담금은 부담금을 납입하는 과세 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되나 납입 단계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 단계 투자수익은 50%의 세율로 원천징수됨
 - 과세이연 효과가 없음
- RCA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는 제외하므로 해외 파견자에게 적용되는 외국 연금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EBP로 분류됨

162) Pwc(2013), pp. 6~13

163)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단순히 과세이연이 목적인 경우에는 급여이연제도(salary deferred arrangement)도 고려될 수 있음

가) 해외 파견 근로자

- 국외에서 거주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외국 연금제도는 캐나다 세무목적상 종업원복지제도(Employment benefit plan, EBP)로 고려될 수 있음
 - EBP는 적격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지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외부에 자금을 예치하는 제도임
 - 사용자 부담금은 인출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며, 근로자는 인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적격 퇴직연금제도에 상응하는 조세혜택이 있음

- 미국에 체류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인 경우 미국 연금제도에 납입한 특정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캐나다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연금규정에 의함
 - 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캐나다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사용자는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함
 -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 근로대가는 미국에서 과세되어야 함
 - 근로자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는 미국 소득공제 한도와 미사용 RRSP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임

나)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연금제도(외국 연금제도)에 납입한 특정 사용자 부담금은 EBP 연금 부담금으로서 손금산입이 허용됨
 - 외국에 설립된 외국 연금제도로 캐나다 거주 전 이미 외국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캐나다 근로 개시 이전 6년 중 최초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자였다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의미함

- 외국 연금제도에 불입한 외국인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조세조약상 요건 충족 시 소득공

제가 가능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조세조약 규정에서는 외국 연금제도 연금 부담금의 소득 공제를 허용함
- 캐나다 근로 개시 이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주기로 외국 연금제도에 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연금 부담금은 캐나다 근로 수행기간 동안 근로와 관련하여 납입되어야 하며, 근로 대가는 캐나다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고, 최초 5년 이하 기간에 한하여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가 허용됨
 - 단, 5년 기간은 조세조약마다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 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모국에서도 허용되어야 함

2) 국내 및 국외 이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

가) 거주자로서 해외로부터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국외 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 급여는 수령 시 과세되며, 연금 부담금 불입시기, 조세조약 여부, 국외 연금제도의 캐나다 세무상 분류 등을 고려하여 과세방법이 결정됨

나) 비거주자로서 국내로부터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캐나다에 소득원천이 있는 적격연금제도의 연금 급여(distribution)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임
-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연금 급여의 과세대상 부분 중 캐나다 원천소득에 대하여 25%로 원천징수됨
 -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하여 세무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¹⁶⁴⁾

164) Section 217

3) 조세조약에 의한 국외 퇴직연금제도 조세지원¹⁶⁵⁾

-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연금 급여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 과세권이 있음
- 원천지국은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정기적 연금형태의 지급과 일시금 형태의 지급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함¹⁶⁶⁾
 - 정기적 연금 지급액 (periodic pension payment)인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함
 - (a) 12,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정기적 연금 지급액의 15%¹⁶⁷⁾
 - (b) 개별 연금 지급액에 제한세율 적용 시 산출된 금액
 - 일시금(lump-sum payment)인 경우에는 25% 원천징수함
 - 연금 지급액과 일시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a)와 (b)를 더한 금액으로 과세함
 - (a) 12,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정기적 연금 지급액의 15%와 개별 연금 지급액에 제한세율 적용 시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
 - (b) 일시금의 25%

165) <http://www.cra-arc.gc.ca/tx/nnrstdnts/crssbrdrpnsn-eng.html>

166) Canada Revenue Agency(2007), p. 2

167) 12,000캐나다달러는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기적 연금지급액이 12,000캐나다달러 이하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표 Ⅲ-16〉 조세조약 연금소득 원천지국 과세규정

(단위: %)

국가	제한세율		국가	제한세율		국가	제한세율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알제리아	15	25	자메이카	25	25	이스라엘	15	25
아르헨티나	15	25	일본	25	25	이탈리아	15	25
아르메니아	15	25	요르단	25	25	코트디부아르	15	25
오스트리아	25	25	카자흐스탄	15	25	남아프리카	25	25
아제르바이잔	15	25	케냐	15	25	스페인	15	25
방글라데시	15	25	한국	25	25	스리랑카	15	25
바베이도스	15	25	쿠웨이트	15	25	스웨덴	25	25
벨기에	25	25	키르기스스탄	15	25	스위스	15	25
브라질	25	25	라트비아	15	25	탄자니아	15	25
불가리아	15	25	리투아니아	15	25	태국	25	25
케메룬	25	25	룩셈부르크	25	25	트리니다드토바고	15	25
칠레	25	25	말레이시아	15	25	튀니지	25	25
중국	25	25	몰타	15	25	코트디부아르	15	25
크로아티아	15	25	멕시코	15	25	가봉	25	25
키프로스	15	25	몰도바	15	25	싱가포르	25	25
호주	15	15	몽골	15	25	슬로바키아	15	25
체첸	15	25	모로코	25	25	슬로베니아	15	25
덴마크	25	25	네덜란드	15	25	우크라이나	25	25
도미니크공화국	18	25	뉴질랜드	15	15	아랍에미리트	25	25
에콰도르	15	25	나이지리아	25	25	영국	-	25
이집트	25	25	노르웨이	15	25	미국	15	25
에스토니아	15	25	오멘	15	25	우즈베키스탄	25	25
핀란드	20	25	파키스탄	25	25	베네수엘라	25	25
프랑스	25	25	파파아뉴기니아	15	25	베트남	15	25
독일	15	25	페루	15	25	잠비아	15	25
가이아나	25	25	필리핀	25	25	짐바브웨	15	25
헝가리	15	25	폴란드	15	25	레바논	15	25
아이슬란드	15	25	포르투갈	15	25	세네갈	15	25
인도	25	25	루마니아	15	25	아일랜드	15	25
인도네시아	15	25	러시아	25	25	-	-	-

자료: Canada Revenue Agency(2007), p.12~18, Appendix C Withholding tax rates on pensions and annuities paid to residents of countries with which Canada has an income tax convention in force 재조정함

- 캐나다가 일부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납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조세조약상 연금제도 조세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RPP에 상응하는 외국 연금제도의 적격성에 대한 CRA 승인을 득해야 함
 - 캐나다 근로 개시 이전 근로자는 연금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정기적으로 연금 불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연금 부담금은 반드시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근로와 관련하여 캐나다 근로기간 동안 납입되어야 함
 - 해당 근로에 대한 보수는 캐나다에서 과세되어야 함
 -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는 최초 60개월에 한하여 허용함¹⁶⁸⁾
 - 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과세연도 캐나다 세무신고 시 모국에서 가능한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한도(money purchase limit)의 50%, 근로 소득(earned income)의 9%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를 적용함
 - 최대 연금 불입액은 한해 동안의 money purchase limit의 50% 또는 한해 동안 개인의 근로소득의 9% 중 적은 금액임
 - 단, 파견 이전 과거 근로에 대한 연금 부담금 불입액,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개인의 연금 불입액은 조세조약에 의한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연금제도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조세조약상 조세지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칠레(2000), 에콰도르(2002), 에스토니아(1996), 핀란드(2007), 그리스(2011), 리투아니아(1998), 슬로베니아(2003), 스웨덴(1998), 스위스(1998), 베네수엘라(2005) 등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사용자 연금 부담금(employer-sponsored pension plan contributions) 규정이 있으나 적격 퇴직연금제도로 인정된 경우가 없음
 - 해당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조세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캐나다 조세지원 제도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 2009년부터 발효되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의정서 연금 부담금 특례규정은 기존 조세조약보다 더 상세하므로 그 특례규정의 내용을 살펴봄

168) 캐나다·핀란드 조세조약 경우 48개월임

가) 캐나다 · 미국 조세조약

-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비하여 적용대상 거주자, 적용대상 연금제도, 조세지원의 범위 등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됨
 - 국가 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매우 빈번하고, 국가 간 통근자, 미국 시민권자 지위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캐나다 · 미국 조세조약상 연금 관련 규정은 실무적 절차를 고려하여 상세하게 규정됨

- 캐나다 · 미국 조세조약은 1980년에 체결되고, 1983년, 1984년, 1997년에 의정서에 의해 개정됨
 - 2009년 1월부터 발효된 2007년 개정 의정서의 연금규정은 연금 부담금에 대한 조세 지원을 유지하여 국가 간 인적자원의 이동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함¹⁶⁹⁾

- 모국(home country)의 적격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국외 근로를 위하여 파견국(host country)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조세조약상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국 적격연금제도 근로자 연금 부담금이나 연금 급여는 파견국의 세무신고 시 소득 공제 또는 비과세됨
 - 특정 요건 충족시 모국 적격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은 파견국 내 사용자(employer)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이 허용됨

- 파견국 세무신고 시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파견국 사용자의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파견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파견국에서 과세됨
 - 파견국 근로 개시 직전 모국 적격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파견국 근로 개시 이전 근로자는 파견국의 거주자 지위는 필수요건이 아님

169) 이외에도 해외 파견 근로자 및 캐나다 거주자로 캐나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미국 시민권자 상황을 고려하고, 적격연금제도의 정의, 연금 및 퇴직연금제도에서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원천, 파트너십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공하기 위함

- 파견국 내에서 근로제공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파견국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employer)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 파견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연금 부담금과 연금 급여는 파견국에서 수행되는 근로자의 근로용역에 귀속되어야 함
-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모국과 파견국 소득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임
- 미국이 모국인 경우, 캐나다 세무상 목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담금은 미국세법 Section 415 또는 402(g)에 의해 규정된 금액으로서 근로자의 보상으로부터 지급되는 부담금 범위까지로 제한됨
 - 캐나다가 모국인 경우, 미국 세무목적상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담금의 금액은 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146(5), 14(8), 147.1(8), 147.1(9), 147.2(1), 147.2(4), 캐나다 소득세법 시행령 문단 8503(4)(a)에 의해 규정된 금액임
- 외국연금제도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파견국 세무목적상 손금 공제로 인정되지 않지만, 2007년 의정서에 의하여 파견국 내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국 연금제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 2007년 의정서는 캐나다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캐나다 적격연금제도에 가입된 개인에 대하여 논의함
- 캐나다 적격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된 연금 부담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 충족 시 미국 내 과세소득 계산 시 소득공제하거나 비과세됨¹⁷⁰⁾

170)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캐나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된 근로활동에 귀속하는 대가는 캐나다에서 과세되어야 함
- 근로에 대한 대가는 캐나다 거주자인 사용자나 또는 캐나다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

- 미국 및 캐나다 양국에서 허용되는 적격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정함
 - 적격퇴직연금제도는 미국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신탁, 회사, 또는 다른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설정된 계약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주로 연금 또는 퇴직급여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운용됨
 -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가 아닌 개인연금제도는 포함되지 않음
 - 미국 개인퇴직계정(IARs), 캐나다 등록퇴직저축제도(RRSPs), 캐나다 퇴직급여계좌(RCAs)는 2007년 의정서 목적상 별도로 논의되지 않는 한 적격퇴직연금제도가 아님
 - 캐나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는 Registered pension plan(RP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s(RRSP), Registered saving plan(RSP),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RRIF)가 포함됨
 -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에는 적격연금제도(qualified annuity plan), 401(k) 연금제도, 개인퇴직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lans, IRP), 간이퇴직제도계좌 (simple retirement plan accounts), 403(b)제도,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등이 포함됨

- 연금 및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distribution)는 해당 연금제도가 등록된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봄

〈표 Ⅲ-17〉 조세조약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 부담금 규정¹⁾

국가	발효일	조세지원	적격연금제도
프랑스	1989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AGIRC와 ARRCO를 프랑스 적격연금제도로 봄 ²⁾
독일	2001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전문직총협회(Berufskammern) 가입회원을 위한 전문가연금제도를 독일 적격연금제도로 봄
아일랜드	2006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아일랜드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세지원의 적용을 받는 기업연금제도는 적격연금제도임
라트비아	1996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라트비아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세지원의 적용을 받는 특정 기업연금제도(closed pensiju fonds)는 적격연금제도임
네덜란드	1987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네덜란드 소득세법(The Dutch Wage-Income Tax Act 1964)에 의하여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연금제도는 적격연금제도임
남아프리카	1998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남아프리카 관련 법령(Pension Funds Act)에 의한 기업연금제도(pension fund)는 적격연금제도임
영국	2005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영국 관련법령(the Finance Act 2004)에 의하여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연금제도(occupation pension scheme)는 적격연금제도임
미국	2009년 1월 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미국 적격연금제도, 401(k) 연금제도, IRP, 간이퇴직제도계좌, 403(b)제도, IRA는 캐나다의 적격연금제도로 봄

주: 1) 공적연금인 사회보장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음

2) AGIRC(les régimes des cadres placés sous le contrôle de l'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s des cadres), ARRCO(les régimes des salariés non cadres regroupés au sein de l'Association des régimes de retraites complémentaires)

자료: Canada Revenue Agency(2011), <http://www.cra-arc.gc.ca/tx/nrrsdnts/crssbrdrpnsn-eng.html>

IV.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미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는 EET형(면세-면세-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¹⁷¹⁾
 - 우리나라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 단계 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EET형이라기보다는 EET와 TEE가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운용 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법인세 부과규정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EET형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인 TFSA의 경우는 TEE (과세-면세-면세) 형태를 따름
 - 미국은 일반적으로 EET형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Roth 401(k) 제도의 경우에는 TEE 형태를 따름
 - TEE형의 경우 납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 등을 통한 과세이연은 되지 않지만 운용 단계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우리나라 비과세 금융상품과 세제지원 효과가 유사함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4개국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살펴본 결과, 퇴직연금

171) 납입 단계에서 면세라고 함은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사용자 부담금의 과세이연을 의미함

제도의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에는 납입 단계가 아닌 수령 단계로 과세가 이연되고, 개인연금 부담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어 과세이연이 가능함
-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감세 혜택이 주어지고, 일부 국가는 연금 급여 수령 시 감세 혜택을 제공함

1) 납입 단계 국제비교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퇴직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납입 단계에서 사용자가 적격퇴직연금 제도에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연금 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됨

〈표 IV-1〉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사용자)

구분	사용자 부담금 적립·손금산입한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DB형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한도 = Max [①, ②] - ③ ①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기말퇴직급여충당금 잔액 ②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기말퇴직급여충당금 잔액 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금액 전액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한도 Min(①, ②) ① 3년 연속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기간의 평균급여 100% ② 20만달러 ○ 손금산입 한도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96.67캐나다 달러 (근속연수당)
DC형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 전액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형 확정각출형 법정부담금 월 51,000엔²⁾ -한도 내 전액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한도 Min(①, ②) ① 총급여¹⁾ 100% ② 50,000달러 ○ 손금산입 한도 총급여 25% + 선택적 이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①, ②) ① 연소득 18% ② 24,270캐나다 달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SEP IRA ○ 적립한도 : Min(①, ②) ① 총급여 25% ② 51,000달러 ○ 손금산입 한도 총급여 25% 2) SIMPLE IRA ○ 총급여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PSP Min(①, ②) ① 연소득 18% ② 12,135캐나다 달러

주: 1) 총급여는 255,000달러(2013년 기준)을 한도로 함

2)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 25,500엔임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근로자 부담금 적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미국의 경우 근로자 적립이 가능함
- 그러나, 근로자 소득공제는 일본에서만 허용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한국, 일본, 미국은 근로자 적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캐나다와 미국의 SEP IRA는 근로자 적립이 불가함

-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적으로 고려됨
 - 한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불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최고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함
 - 캐나다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는 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인 RRP, DPSP에 불입된 연금 부담금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외국 연금제도에 불입된 외국인 사용자 연금 부담금도 소득공제 한도 계산 시 고려됨
 - 한해 동안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인 경우 최대 24,270캐나다달러임
 - 미국은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연금 부담금을 불입하는 경우 최대 17,500달러 외 개인연금계좌인 IRA에 불입한 연금 부담금 중 최대 5,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한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신고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일본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최고 4만엔 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우에는 법정 사용자 부담금 한도 내에서 적립한 근로자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함
 - 이외에도 개인형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최고 276,000엔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표 IV-2〉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근로자)

구분	근로자 부담금 적립·소득공제 한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DB형 퇴직연금	○ 근로자 적립 불가	○ 근로자 적립 가능 ○ 소득공제 가능 ¹⁾ ○ 최고 4만엔 한도	○ 근로자 적립 가능 ○ 소득공제 불가	○ 근로자 적립 불가
DC형 퇴직연금	○ 근로자 적립 가능 ○ 400만원 (개인연금 통합)	○ 근로자 적립 가능 ○ 사용자법정부담금 한도 내 (최고 50%)	○ 근로자 적립 가능 ○ 17,500달러 (50세 이상 23,000달러)	○ 근로자 적립 불가
기타	○ 개인연금 경우 퇴직연금 통합하여 400만원	○ 개인형 확정각출형연금 경우 근로자 적립 가능 ○ 월 23,000엔 (연 276,000엔) ²⁾	1) SEP ○ 근로자 적립 불가 2) SIMPLE IRA ○ 12,000달러 (50세 이상 23,000달러)	○ RRSP Min(①, ②) - PA ³⁾ ① 직전연소득 18% ② 23,820캐나다달러
사용자 부담금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불포함

주 : 1)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되며 2011.12.31. 이전 계약분은 최고 5만엔 한도임
 2) 단,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자영업자의 경우 월 6,800엔)
 3) PA는 사용자 지원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금 급여의 가치를 의미함

2) 운용 단계 과세제도 국제비교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일본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잔액의 1.173%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세를 부과함
 - 일본의 특별법인세는 2001년부터 10년간 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됨

〈표 IV-3〉 운용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운용수익 비과세	특별법인세 1.173% ¹⁾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주: 1) 특별법인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금이 조세지원에 의해 퇴직시까지 과세이연되는 것에 대한 연체세임

3) 수령 단계 과세제도 국제비교

- 연금 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납입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음
- 연금 급여 수령 단계에서도 국가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할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는 연금으로 수령 시 배우자와 최대 50%까지 연금소득을 분할 신고할 수 있어 낮은 수준의 유효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납입 단계에서 광범위한 소득공제를 허용했던 일본은 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공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 50% 비과세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게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 비과세, 근속연수 공제(이하 퇴직소득공제) 그리고 연분연승법에 의한 소득세를 계산함
 - 미국은 근로자 순투자액에 해당하는 원금(cost)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되며, 통상소득에 합산함
 - 1932년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10년 연분연승법이나 20% 자본소득세제 선택 등의 세제혜택이 있음

〈표 IV-4〉 수령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정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 과세 ○ 연금소득공제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소득 과세 ○ 연금소득공제²⁾ ○ 5.105%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cost)산출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 결정됨⁵⁾ ○ 통상소득에 합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최대 50%까지 분할신고 가능 ○ 연금소득 세액공제 ○ 통상소득에 합산됨
비정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 과세³⁾ ○ 퇴직소득공제⁴⁾ ○ 연분연승법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 과세 ○ 퇴직소득공제 ○ 50% 비과세 ○ 소득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2년 이전 출생자는 신고 시 세계 혜택있음 ○ 1932년 이후 출생자 경우 수령시점, 적격연금제도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음 ○ 통상소득에 합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10~15%) 후 통상소득 과세

주: 1)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임
 2) 연금소득공제는 연령·수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연금의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4) 퇴직소득공제에는 40% 비과세와 근속연수비례 소득공제가 포함됨
 5) 원금은 납입 단계에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근로자 순투자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함. 간편법, 일반법 등에 의하여 과세 제외 부분을 계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함

나.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세

- 적격퇴직연금제도에 제공되는 조세지원은 ‘과세이연’이 주된 내용임
 - 납입 단계 시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수령 단계에서 과세함
 -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 후 수령 단계에서 과세함
 -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발생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령 단계에서 과세함

- 퇴직연금은 과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사망을 원인으로 하거나, 과거 고용

과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금을 의미함¹⁷²⁾

-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 단계에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적격퇴직연금제도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납입 단계가 아닌 수령 단계에서 과세함

□ 그러나 국제이동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주지국과 용역 수행지국(파견국) 간 연금 부담금과 관련한 개별 국가의 세무상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 효과가 상실되거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¹⁷³⁾

-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파견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퇴직연금제도에 제공되는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됨
 - 국제이동 근로자가 처하는 세무환경은 거주지국인 모국뿐만 아니라 파견국에서의 세무적인 결과도 고려하여야 함
- 파견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모국 세무신고 또는 수령 단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함
 - 납입 단계의 근로자 소득세 세무신고 시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으로 사용자 부담금에 부과된 파견국의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수령 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응하여 과세시기 및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파견국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함

□ 그리고 모국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파견국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할 수 없으므로 납입 단계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이연 효과는 사라지게 됨

172) 한·미 조세조약 제23조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73) 박수진(2012), p. 73

〈표 IV-5〉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처리¹⁾

구분		납입 단계		수령 단계	
		모국	파견국	모국	파견국 ²⁾
모국 적격퇴직 연금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가능	과세소득	과세소득	-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불가	과세소득	-

주: 1) 근로자는 모국의 국내·외 소득 신고의무가 있음
 2) 부담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이 과세될 수 있음

- 모국 퇴직연금제도 또는 외국 적격퇴직연금에 해외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 진출 형태나 사업부 간 비용배분, 적격연금 가입조건 등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게 됨
 - 손금산입 시 사용자 부담금의 과세이연 세제지원 효과는 상실될 수 있음
 - 사용자 부담금이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손비가 아닌 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효과가 상실될 수 있음
- 국제이동 근로자 연금 부담금과 관련한 이중과세 경감 및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내국세법상 규정을 검토한 후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관련 규정을 검토함

1) 내국세법상 규정

- 국제이동 근로자를 해외파견 근로자(outbound employee)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inbound employee)로 구분하여 국가별 규정을 검토함
 - 국제이동 근로자는 모국 세무신고 시 국내·외 소득신고의무가 있음을 상정함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는 내국세법상 외국 적격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 단계 시 근로자 근로소득으로 보며,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음¹⁷⁴⁾¹⁷⁵⁾

- 미국, 캐나다의 경우 조세조약 연금 부담금 규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의 과세이연,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함
 - 조세조약 체결당사국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체결 유무, 조세조약상 면세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한국은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음¹⁷⁶⁾
 - 일본 역시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 과세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캐나다, 미국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함
 -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며, 원천지국(지급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 외국납부세액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경감함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 미국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가 적용되어 상대방 체결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연금 급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 제한세율(15% 또는 25%)이 적용되며, 일정금액(12,000달러) 이하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신청에 한해 비과세 처리함

174) 원천-5, 2010.01.04.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175)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및 제3항

176) 국업46017-24, 2000.01.13.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표 IV-6〉 국제 이동 근로자 연금 소득 과세 규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하는 외국연금소득	○ 과세근거 없음	○ 과세근거 없음	○ 과세소득 해당됨	○ 과세소득 해당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국연금소득	○ 조세조약 거주지국 과세원칙 경우 비과세함 ○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이 요구되지 않음 ○ 조세조약 없거나,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 일본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중 일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임 ¹⁾ ○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율 20%가 적용됨	○ 미국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 중 미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임 ○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30% 원천징수율이 적용됨 ○ 캐나다·덴마크·프랑스·남아프리카·필리핀·인도네시아·폴란드의 경우 미국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 캐나다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중 캐나다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됨 ³⁾ ○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25% 원천징수율이 적용됨 ○ 캐나다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함

주: 1)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이 있는 경우, 미국, 캐나다는 납입 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 과세 이연 허용 및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 미국은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한 특정 사용자 부담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함
 - 해외 자회사나 국내 자회사의 해외 지점은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 가입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특정 사용자 부담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됨
 - 단,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는 미국원천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함

- 캐나다는 외국 연금제도에 불입하는 특정 사용자 부담금은 종업원 복지제도 (Employment benefit plan, BEP)의 일환으로 보고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수령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과세하여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
 - 해외 파견 근로자나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 연금제도에 불입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BEP 일환으로 보고 손금산입이 가능함

- 국내체류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RCA)에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과세이연되지 않음
- 한국은 국제 이동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업무 관련 인건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과세이연은 허용되지 않음

〈표 IV-7〉 국제 이동 근로자 외국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규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해외파견 근로자	업무 관련 인건비로 손금산입 가능함	-		○ BEP 부담금은 손금산입 가능함
국내거주 외국인	업무 관련 인건비로 손금산입 가능함	-	○ 업무관련 인건비로 손금산입 가능함	○ RCA 부담금은 손금산입 가능함

자료: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2)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 대부분 조세조약 연금조항은 연금수령액(distribution from pension plans)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 부담금(contribution to pension plan)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조세조약에서는 대체로 연금소득의 국가별 과세권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OECD 모델협약은 퇴직연금 급여 수령 시 연금 발생의 원천이 있는 국가가 아닌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함
 - EET형 과세체계인 경우 수령 단계에서 거주국에서의 이전 시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한 국가에서는 세수손실을 회복할 수 없음
 - 2005년 OECD 모델협약 주석서 개정 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에서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대부분은 연금소득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¹⁷⁷⁾
 -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파나마·바레인 등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며, 남아프리카·덴마크·벨기에·싱가포르·인도네시아·체코·카타르·캐나다·태국·우루과이 경우에는 거주지국·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가 가능함
 -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는 원천지국 과세도 가능함
 - 그러나,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연금 급여에 대한 과세권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에 있음(〈표 III-16〉 참조)

- 2000년대 전후로 하여 기업연금제도가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연금 부담금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경감하고 조세지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체결 시 연금 부담금 특례 규정을 반영함
 - 조사국 중 한국,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연금소득 과세권 배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연금 부담금 규정은 반영하지 않음
 - 미국, 캐나다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연금 부담금 규정이 포함됨

〈표 IV-8〉 국가별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납입 단계	-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연금부담금 특례규정이 있음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영국, 남아프리카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연금부담금 특례규정있음
수령 단계	거주지국 과세원칙 (일부 원천지국 과세 가능)	거주지국 과세원칙 (일부 원천지국 과세 가능)	거주지국 과세원칙 (일부 원천지국 과세 가능)	거주지국·원천지국 과세원칙(제한세율)

자료: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177) 이용섭(2012), p. 374

- 미국이 체결한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 연금 부담금 규정을 살펴보면 ① 모국 적격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은 파견국 내에서 근로소득 불포함(과세이연), ② 외국 적격퇴직연금제도 근로자 부담금의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 허용(과세이연), ③ 운용 단계의 투자수익 비과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표 III-11〉 참조)
- 단, 조세지원은 모국과 파견국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대상이 되는 적격퇴직연금제도는 체약 당사국 간의 세무목적상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상응하여야 함
 - 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의 연금제도 유형에 대한 국가 간 약정을 체결하기도 함
 - 영국,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 의정서에서는 적격퇴직연금제도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규정도 포함됨
-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은 대체로 외국 적격퇴직연금제도 근로자 부담금의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표 III-17〉 참조)
- 그러나, 미국과의 조세조약 의정서(개정)에서는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의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운용단계의 투자수익 비과세 관련 조세지원도 포함함
 -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와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요건이 제시됨
 - 이 외에도 미국 및 캐나다 양국에서 허용되는 적격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정하여 의정서 본문에 열거함¹⁷⁸⁾
-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에 의한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와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음

178) 캐나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는 RPP, RRSP, RSP, RRIF가 포함되고,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에는 적격연금제도, 401(k) 연금제도, 개인퇴직제도(individual retirement plans, IRP), 간이퇴직제도 계좌(simple retirement plan accounts), 적격연금제도(qualified annuity plan), 403(b)제도, IRA 등이 포함됨

- 파견국에서 체류하면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수령한 보수는 파견국에서 과세됨
 - 파견국 근로 개시 직전 모국 적격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파견국 근로 개시 이전 근로자는 파견국의 거주자 지위는 필수요건이 아님. 파견국 내에서 근로제공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파견국내에서 동일한 사용자(employer)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 파견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되거나 발생된 연금 부담금과 연금 급여는 파견국에서 수행되는 근로자의 근로에 귀속되어야 함
- 조세조약에 의한 외국 연금제도에 납부한 특정 연금 부담금 조세지원은 해당 계약당사자국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범위 내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2. 시사점

가. 국제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

- 세계화·교통 및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이전이 과거에 비해 더욱 용이해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국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거의 모든 선진사회에서 외국인이 정주자(denizen)로 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¹⁷⁹⁾
- 우리나라 역시 국제 인구이동 추이는 20세기 초까지는 해외로 이주하는 내국민의 비중이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보다 큰 이민 송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¹⁸⁰⁾, 2006년 이후에는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더 커짐([그림 IV-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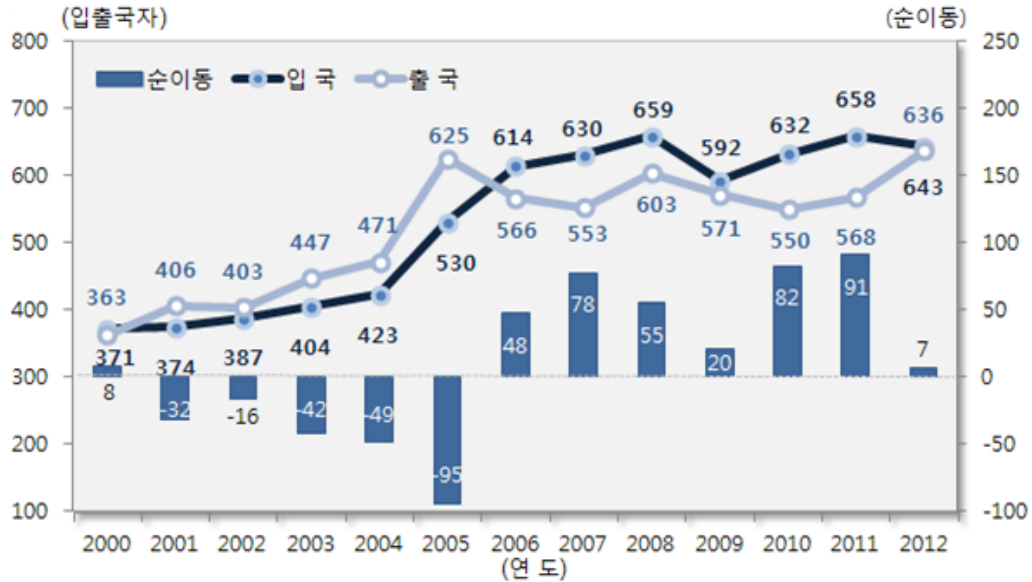
179) Hammer(1990), 설동훈(2013) 재인용, p. 22

180) 설동훈(2013), p. 28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만주·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광원과 간호사들이 독일로, 그 뒤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중동 산유국들로 진출함

[그림 IV-1] 국제 인구이동 추이(2000~2012)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12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보도자료, 2013. 7. 2.

-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나 외국인의 유입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도 앞서고 있음(〈표 IV-9〉 참조)¹⁸¹⁾
 -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를 시작으로 해서 1990년대 초부터는 결혼이민자, 2000년 무렵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로 시대별 특징을 보이고 있음¹⁸²⁾
 -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¹⁸³⁾

181) OECD 국가중 멕시코,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음

182) 설동훈(2013), p. 28

183) 설동훈(2013), p. 28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다가,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를 실시함.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

〈표 IV-9〉 영구 이주 외국인 증감 추이(OECD 국가, 표준통계)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 비중	증감률
미국	1,052,400	1,107,100	1,130,200	1,041,900	1,061,400	0.34	0.86
스페인	691,900	409,600	334,100	300,000	349,300	0.76	-49.52
영국	343,300	317,300	352,700	388,000	321,200	0.52	-6.44
이탈리아	559,200	482,600	384,200	349,900	312,200	0.52	-44.17
독일	232,800	228,300	201,500	222,500	290,800	0.36	24.91
캐나다	236,800	247,200	252,200	280,700	248,700	0.72	5.03
호주	191,900	205,900	221,000	208,500	219,500	0.97	14.38
프랑스	184,500	192,200	182,100	196,300	211,300	0.33	14.53
스위스	122,200	139,100	114,800	115,000	124,300	1.57	1.72
네덜란드	80,600	90,600	89,500	95,600	105,600	0.63	31.02
벨기에	50,300	51,200	64,200	64,100	76,500	0.69	52.09
스웨덴	74,400	71,000	71,500	65,600	71,700	0.76	-3.63
노르웨이	43,700	48,900	48,500	55,900	60,300	1.22	37.99
일본	108,500	97,700	65,500	55,700	59,100	0.05	-45.53
오스트리아	47,100	49,500	45,700	45,900	58,400	0.69	23.99
한국	44,200	39,000	36,700	51,100	56,900	0.11	28.73
뉴질랜드	51,700	51,200	47,500	48,500	44,500	1.01	-13.93
덴마크	30,300	45,600	38,400	42,400	41,300	0.74	36.30
포르투갈	42,800	71,000	57,300	43,800	36,900	0.35	-13.79
아일랜드	120,400	89,700	50,700	23,900	33,700	0.75	-72.01
체첸	98,800	71,800	39,000	30,500	22,600	0.22	-77.13
멕시코	6,800	15,100	23,900	26,400	21,700	0.02	219.12
핀란드	17,500	19,900	18,100	18,200	20,400	0.38	16.57

자료: OECD(2013a), Table 1.1. Inflows of permanent immigrants into selected OECD countri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7-2011 재구성

- 우리나라 내국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해외 이주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해외 이주자 수는 소폭 증감하고 있음(〈표 IV-10〉 참고)
 - 해외 이주는 취업 이주, 독립 이주, 연고 이주(초청), 국제결혼, 사업 이주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구 이주(permanent migration) 형태 이외에도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은 다국적기업들의 등장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여 인적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일상적인 현상이 됨
 - 다국적기업 내 종업원 교환근무(intra-company transferees) 또는 전문직종의 국가 간 근무 등 단기적인 이동이 추세를 이루고 있음¹⁸⁴⁾

〈표 IV-10〉 해외이주자 증감 추이¹⁾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11,758	2,412	16,291	17,393	16,605	14,032	12,829	13,171	12,447	12,447	10,843
캐나다	6,937	5,658	5,858	3,898	2,792	2,778	2,075	3,483	2,721	2,315	1,375
호주	673	948	1,333	1,761	1,940	1,835	1,846	1,749	1,608	1,556	906
뉴질랜드	1,451	1,182	1,160	1,422	1,574	942	386	645	721	780	570
라틴아메리카	122	557	500	378	281	433	490	591	510	509	81
기타	2,116	2,827	4,496	3,855	3,044	2,988	3,320	2,786	3,011	3,464	1,548
합계	23,057	23,584	29,638	28,707	26,236	23,008	20,946	22,425	21,018	21,071	15,323

주: 1) 해외이주신고자와 현지이주신고자 합계임.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전에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
- 현지이주자: 외국 거주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재외공관에 현지이주신고한 자

자료: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 국내활동을 영위하는 거주자 위주의 과세체계를 가진 현행 소득세제는 국내·외 이주나 파견 등을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동 인력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득세제는 국가의 영토 내 주권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 및 정치적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받음
 - 그리고 소득세제를 순수하게 국내적인 문제로만 간주하여 국내활동을 영위하는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 이미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부여한 조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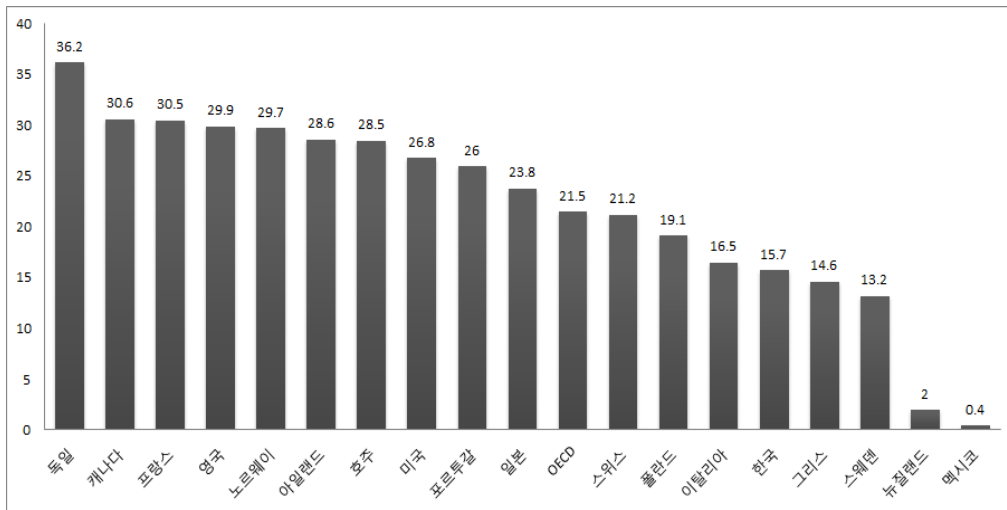
184) Li(2006), p. 8

을 국제이동 근로자는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문에서 살펴보았음

- 자본의 국제화와 더불어 인적자본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새로운 납세환경에 대응하여 과세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이동 근로자의 조세 공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위하여 2013년 퇴직연금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으나, 국제이동 근로자 관련 세제부문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OECD 국가별 조세지원 효과(부담금 대비 조세지원의 비율)를 살펴보면 조사국 중 캐나다가 3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26.8%), 일본(23.8%)순으로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원 혜택은 15.7%로 OECD 국가 중에서 22위임¹⁸⁵⁾

[그림 IV-2] 사적연금제도를 위한 조세지원¹⁾

(단위: %)



주: 1) 2011년 1월 1일 기준 부담금 대비 조세지원 비율임
 자료: OECD(2011) 발취 및 재구성

185) OECD(2011), p. 157, OECD 평균은 21.5%임

나. 외국연금소득 과세규정 정비

-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이하 외국연금소득)은 조세조약 연금규정에 의해 일차적으로 과세권 배분이 결정되며, 내국세법에서 과세소득 여부를 규정하게 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대부분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며 2005년 이후 체결하거나 개정된 조세조약부터 원천지국에서도 과세가 가능한 국가가 있음¹⁸⁶⁾
-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국가로부터 외국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음
 -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외국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임
 - 외국연금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국제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 실무상 조세징수의 비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음¹⁸⁷⁾
 -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지배적인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써 중요한 세원을 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의 경우 내국세법 규정에 의해 외국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대체로 연금소득의 과세권이 거주지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캐나다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가 가능함
- 인적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하여 외국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던 외국인 거주자¹⁸⁸⁾와 과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 퇴직연금제도

186) 덴마크, 인도네시아, 브라질,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과의 조세조약은 2005년 이전 체결되었으나 원천지국에서도 과세 가능함

187) 또는 일반적으로 EET형 체제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과세제도에서는 우리나라가 과세이연, 소득공제 등 조세지원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음

188)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재외동포를 포함함

에 가입 후 국내로 귀환한 거주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 외국연금소득 수령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01년 229,600명에서 2011년 현재 982,5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조세조약상 연금소득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있음
 - 단, 태국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가 가능함
- 2000년대 전·후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실제 연금 급여 수령자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최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 조세징수 실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외국연금소득 관련 정보의 입수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거주지국에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손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므로 국제이동 인력 증가와 조세정보 확보 가능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납세환경에 대응하여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한 외국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근거를 소득세법에 포함하는 개선작업이 요구됨

〈표 IV-11〉 국적별 외국인 체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73.6	84.5	185.5	208.8	217.0	311.8	421.5	487.1	489.1	505.4	536.7
베트남	16.0	16.9	23.3	26.1	35.5	52.2	67.2	79.8	86.2	98.2	110.6
필리핀	16.4	17.3	27.6	27.9	30.7	40.3	42.9	39.4	38.4	39.5	38.4
인도네시아	15.6	17.1	28.3	26.1	22.6	23.7	23.7	27.4	25.9	27.4	29.6
미국	22.0	37.6	40.0	39.0	41.8	46.0	51.1	56.2	63.1	57.6	26.5
태국	3.6	4.8	20.0	21.9	21.4	30.2	31.7	30.1	28.7	27.6	26.0
우즈베키스탄	4.0	4.1	10.7	11.5	10.8	11.6	10.9	15.0	15.9	20.8	24.4
대만	22.8	22.7	22.6	22.3	22.2	22.1	22.1	27.0	21.7	21.5	21.4
몽골	-	1.4	9.2	11.0	13.7	19.2	20.5	21.2	21.0	21.8	21.3
일본	14.7	15.4	16.2	16.6	17.5	18.0	18.4	18.6	18.6	19.4	21.1
스리랑카	2.5	2.7	4.9	5.5	8.5	11.1	12.1	14.3	14.4	17.4	20.5
캄보디아	-	0.0	0.7	1.3	2.0	3.3	4.6	7.0	8.8	11.7	16.8
네팔	2.1	2.3	4.2	5.3	4.9	5.0	4.6	5.9	7.4	9.2	12.6
방글라데시	9.1	9.0	13.6	13.1	9.1	8.6	7.8	7.7	7.3	9.3	10.6
파키스탄	3.3	3.7	7.1	9.2	8.7	8.9	8.0	7.9	7.8	8.3	8.2
기타	24.0	32.1	46.4	45.9	44.3	48.6	53.0	51.0	66.5	107.6	58.0
합계	229.6	271.7	460.3	491.4	510.5	660.6	800.3	895.5	920.9	1,002.7	982.5

자료: OECD(2013b), p. 381, Table B.5. Stock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다.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 도입의 필요성

- 국제이동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국내·외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한 국가(이하 거주지국)와 근로를 수행하는 국가(이하 파견국 또는 원천지국)에서 동시에 과세될 수 있음¹⁸⁹⁾
 -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경감할 수 있음
 - 연금소득 역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이중과세 경감이 가능함
- 공적연금제도의 경우는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및 조세조약 등을 통하여 이중과세에 대

189)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부분은 본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근로자인 경우 거주자 지위를 계속 유지함을 가정함

한 해결책이 이미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공적연금제도에 납입한 특정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음¹⁹⁰⁾

□ 국제이동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또는 근로자 부담금은 과세이연이라는 조세지원 효과의 상실과 함께 이중과세 위험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거주지국에서는 수령 단계까지 과세이연되나, 파견국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납입 단계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거주지국의 조세지원 혜택이 상실되면서 파견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파견국 납부세액은 납입 단계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거주지국 세무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그리고,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서도 과세시기나 소득 구분을 달리하여 실무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됨
- 거주지국 세무신고 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파견국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상실됨

□ 그 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해외 파견 근로자는 조세지원 효과가 상실됨은 물론이고,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게 됨

- 국내거주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공평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옴

□ OECD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국제 이동 근로자 관련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contribution)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190) 서이46013-10468, 2003.03.10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 1992년 7월 23일 국가 간 연금(Cross-border pension) 부담금에 대한 보고서인 「외국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 부담금의 세무처리(The Tax Treatment of Employee's Contributions to Foreign Pension Schemes)」를 채택하고 모델협약 제18조 주석서(Commentary)에 반영함¹⁹¹⁾¹⁹²⁾
 - 1996년 모델협약 주석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모국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은 파견국 근로자 부담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비과세(excluded)될 수 있음을 명시함¹⁹³⁾
 - 2005년에는 2004년에 발표한 국제 연금제도에 관한 기술적 현안(Technical issues related to cross-border pensions) 보고서를 모델협약 연금소득 주석서에 반영하면서 외국 연금제도에 납부한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금(contribution)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¹⁹⁴⁾
-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깊고, 해외투자활동이 활발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을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2001년에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 국제이동 근로자와 관련하여 조세 공정성 및 조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해외파견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효과를 그대로 유

191) Fleeman(2008), p. 11

192) 모델협약은 본문과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각 조항(article)을 규정하고 주석은 각 조항이 갖는 의미를 문단(paragraph)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193) Serota(2010), p. 14

① 파견국에서 근로 개시 이전 모국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② 모국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에 대한 모국 조세지원이 가능하고, ③ 모국 조세지원에서 허용되는 금액을 하도록 함

194) 조명연(2007), p. 285

이외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권 배분, 국가간 연금수급권 이전문제(portability of pension right), 연금의 범위, 공적연금제도 처리 등에 대하여 정비함

지하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직면한 이중과세를 경감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내거주 내국인 근로자와의 조세 형평성 및 국제이동에 따른 조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원 확보도 가능할 것임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의 과세제외 및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게 되어 세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요구됨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중 단순기능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모국에서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세수손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됨¹⁹⁵⁾

□ 그러므로 조세조약 체결 및 개정시 연금 부담금 규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9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6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38,477	468,940	69,537
전문 인력	소 계	50,598	46,397	4,201
	단기취업(C-4)	901	734	167
	교 수(E-1)	2,765	2,753	12
	회회지도(E-2)	20,830	20,748	82
	연 구(E-3)	2,823	2,814	9
	기술지도(E-4)	211	208	3
	전문직업(E-5)	676	651	25
	예술홍행(E-6)	4,762	3,328	1,434
	특정활동(E-7)	17,630	15,161	2,469
단순 기능 인력	소계	487,879	422,543	65,336
	비전문취업(E-9)	238,271	182,980	55,291
	선원취업(E-10)	11,363	7,302	4,061
	방문취업(H-2)	238,245	232,261	5,984

라. 조세조약상 연금소득 거주지국 과세원칙 변경

- 대부분 조세조약 연금조항은 연금수령액(distribution from pension plans)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OECD 모델협약은 2005년 주석서 개정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급여 수령 시 연금 발생의 원천이 있는 국가가 아닌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규정함
 - 이 경우 EET형 과세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 거주하면서 납입 단계 시 조세지원을 향유하던 개인이 수령 단계 시 거주지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국가는 세수손실을 회복할 수 없음
 - 2005년 주석서 개정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에서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또는 지급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함

- 2005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체결·개정된 대부분 조세조약상 연금소득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임
 - 덴마크, 인도네시아,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브라질은 거주지국과 지급지국에서 모두 과세 가능하고, 칠레는 원천지국 과세국가임
 - 단, 브라질은 3,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 만일 우리나라 근로자가 은퇴 이후 연금소득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됨
 - 납입 단계 시 과세이연이라는 조세혜택만 부여하고, 수령 단계에서 연금소득을 과세하지 못하여 세수손실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연금소득 과세권 배분에 대한 2005년 OECD 주석서 개정 이후 우리나라도 연금소득 과세권을 거주지국뿐만 아니라 원천지국에도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의 체결·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제한세율 15%), 태국, 카타르, 우르과이(제한세율 10%), 싱가포르는 거주지

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며, 파나마, 바레인의 경우에는 원천지국만 과세가 가능함

- 그러나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대부분이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개인이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세수손실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¹⁹⁶⁾
- 국가별 연금소득 규정 및 국제 이동성을 고려하여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체결·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표 IV-12〉 우리나라 조세조약 연금소득 규정 현황(2005년 이후 체결, 개정)

국가	체결·개정일	연금소득 규정	국가	체결·개정일	연금소득 규정
아랍에미리트	2005. 03. 09	거주지국	아이슬란드	2008. 11. 04	거주지국
요르단	2005. 03. 28	거주지국	사우디아라비아	2008. 12. 01	거주지국
라오스	2006. 02. 09	거주지국	아제르바이잔	2008. 12. 04	거주지국
오만	2006. 02. 13	거주지국	카타르	2009. 04. 15	거주지국 원천지국
슬로베니아	2006. 03. 02	거주지국	이란	2009. 12. 08	거주지국
중국	2006. 07. 04	거주지국	라트비아	2009. 12. 26	거주지국
알제리	2006. 08. 31	거주지국	에스토니아	2010. 05. 25	거주지국
크로아티아	2006. 09. 15	거주지국	쿠웨이트	2010. 12. 27	거주지국
캐나다	2006. 12. 18	거주지국 원천지국	파나마	2012. 02. 27	원천지국
벨기에 ¹⁾	2006. 12. 31	거주지국 원천지국	스위스	2012. 07. 17	거주지국
알바니아	2007. 01. 03	거주지국	우르과이	2013. 01. 14	거주지국 원천지국
베네수엘라	2007. 01. 15	거주지국	바레인	2013. 04. 25	원천지국
태국	2007. 06. 29	거주지국 원천지국	싱가포르	2013. 06. 14	거주지국 원천지국
리투아니아	2007. 07. 11	거주지국	-	-	-

주: 1) 벨기에는 의정서 개정전부터 거주지국·원천지국 과세임

196)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득세율이 0%이고, 라오스,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의 소득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음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캐나다의 연금제도』

http://www.nps.or.kr/jsppage/info/worldwide/worldwide_01_01.jsp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퇴직연금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 방안』, 보험연구원, 2011

김연명 외, 『기초연금의 경로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2012

김진수 · 홍범교,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 연금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박수진, 「국제이동성 인력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연금소득 과세제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설동훈,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 · 일본 · 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36권 제1호, 2013

오병국, 「포커스-캐나다 개인연금(RRSP)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 『Kiri Weekly』 2011. 9.26, 보험연구원, 2011

이규용 · 배규식 · 유문희 · 차홍화, 『한중일 인력이동 활성화와 우수외국인력 유치전략』, 한국노동연구원, 2012

임상엽 · 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13

이용섭 · 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이용하,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으로 중심으로」, 『연금연구』, 제1권 제2호, 2011.

이상우 · 오병국,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2-2, 2012

이상율, 「세계 측면에서 본 미국의 사적연금제도(상)」,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1a

이상율, 「세계측면에서 본 미국의 사적연금제도(하)」,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1b

조명연, 「OECD조세모델협약주석서의 개정 동향」, 『조세법연구』[XIII-3], 2007

조영훈,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집문당, 2011

하나금융연구소, 「미국 퇴직연금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31호, 2009

홍원구,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2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日本 国税庁, 「No.1600 公的年金等の課税関係」,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600.htm>)

日本 企業年金連絡協議会, 「海外移住者に係る年金等の税務」

(<http://www.taxlabo.com/kokusaikazei/kaigaiijusya.html>)

日本 厚生労働省(<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01/01-01.html>)

Canada Revenue Agency, “Guidance for Taxpayers Requesting Tax Treaty Relief for Cross-Border Pension Contribution,” 2011

_____, “Applicable rate of part XIII tax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persons in countries with which Canada has a tax convention,” Income Tax Information Circular 76-12R6, 2007

Fleeman, M Grace, “Cross-Border Pension Contributions-A US Perspective,” *The Tax Journal*, 23, June 2008

Hammar, Tomas, “Democracy and the Nation State: Aliens, Denizens and Citizens in a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Aldershot, UK: Avebury,” 1990

IBFD,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10 and Key Tax Features of Member countries 2012*, 2012

IRS, “Publication 560 Retirement Plans for Small Business For Using in Preparing 2012 Returns,” 2013

_____, “Publication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for Use in Preparing 2012

- Return,” 2013
- _____, “Publication 17, Tax Guide 2012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 2013
- _____,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for Use in Preparing 2012 Returns,” 2013
- _____, “Publication 515,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Entities for use in preparing 2012 Returns,” 2013
- _____, “The Taxation of Foreign Pension and Annuity Distributions, International Tax Gap Series,” 2008
- Jinyan Li, “International Mobility of Highly Skilled Workers in the Canadian Context: Tax Barriers and Reform Options,” Skills Research Initiative Working Paper 2006 D-21, Government of Canada, 2006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2009
- _____, *Pensions at a Glance 2011*, 2011
- _____, *Pensions at a Glance 2012*, 2012
- _____, *OECD Pension Indicators(2013)*, 2013a
- _____,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2013b
- Pwc Canada’s Human Resource Services, “Foreign Pension Plans: Impact on Canadian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Pwc, 2013
- Raymond Grant Thornton, *2012-2013 Tax Planning Guide*, 2013,
<http://en.planiguide.ca/tax-planning-guide/section-ix-retirement-assistance-programs/employer-pension-plans/>
- Serota, Susan P., *United States/Canada Cross Border Pension Issues*, 2010,
- Susan D. Diehl, Dodi Walker Gross, G. Daniel Miller, Susan P. Serota, Michael M. Spickard, Marcia S. Wagner, “International Pension Issues In A Global Economy: A Survey and Assessment of IRS’ Role in Breaking Down the Barriers, Advisory Committee on Tax Exempt and Government Entities(ACT),” Report of Recommendations, Public Meeting Washington, DC, June 2009, IRS,

2009

TaxTips.ca Canadian Tax and Financial Information, <http://www.taxtips.ca/rrsp/rrspcontributionlimits.htm>

세법연구 13-01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2013년 9월 23일 인쇄

2013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송은주 · 박수진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1-77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53-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